

SLOVAKIA 
슬로바키아 진출기업을 위한
세무안내
2013



SLOVAKIA 

슬로바키아 진출기업을 위한
세무안내
2013



머 리 말

국세청은 해외 진출한 우리기업에 현지 국가의 조세제도와 행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그 동안 38개 국가를 대상으로 한 『해외진출기업을 위한 세무안내 책자』를 발간하여 왔습니다.

올해에는 점차 우리 기업의 진출이 증가하고 있는 슬로바키아, 프랑스에 대한 세무안내책자를 새로이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2008년 발간된 인도, 말레이시아, 터키, 뉴질랜드에 대한 세무안내 책자에 최근 동향 및 세법 개정내용 등을 반영한 개정판을 증보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이 책자가 해외 진출한 우리기업의 현지 세무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용한 길잡이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2013년 12월

국제조세관리관 기보연



Contents

제1장 국가 개황	1
1. 국가 개요	3
2. 경제 일반동향	4
3. 우리나라와의 관계	8
제2장 조세제도	13
1. 슬로바키아 세제 개관	15
2. 법인세법	17
3. 개인소득세법	29
4. 부가가치세법	33
5. 특별소비세(Excise Tax)	42
6. 지방세	42
7. 사회보장기여금(Social Security Contributions)	44
8. 관련 세법	46
제3장 이전가격(Transfer Pricing)	47
1. 이전가격 법제화 연혁	49
2. 이전가격에 적용되는 법규	49
3. 국외 특수관계자	49
4. 이전가격 산출방법	51
5. 이전가격 산정 관련 구비서류(Documentation Requirement)	52

6. 이전가격 구비서류 제출	54
7. 가산세	54
8. 세무조사	54
9. 소득조정	55
10. APA(Advance Price Arrangement)	55
11. 상호합의	55
제4장 외국인 투자 환경	57
1. 시장 특성	59
2. 슬로바키아 투자 이점	63
3. 외국기업 투자동향	66
4. 무역관련 제도	72
5. 슬로바키아 진출기업의 애로사항	75
제5장 법인 설립	77
1. 법인	79
2. LLC(Limited Liability Company)	79
3. 주식회사(Joint Stock Company)	82
제6장 부 록	85
1. 한·슬로바키아 조세조약(2003. 7. 26 발효)	87
2. 조세조약(요약)	107
3. 노동법	109
4. 관련 기관 및 사이트	116



제 1 장 국가 개황

1. 국가 개요
2. 경제 일반동향
3. 우리나라와의 관계

1 국가 개요

(2013. 03. 30 기준)

국 명	슬로바키아 공화국(Slovak Republika)
위 치	유럽 중동부(체코, 폴란드, 오스트리아 등과 인접)
면 적	49,035km ² (한국의 약1/2)
기 후	대륙성기후(연평균기온 10.4도)
수 도	브라티슬라바(Bratislava, 인구 43만명)
인 구	540만 4,322명(2011년 12월 31일 기준)
주요 도시	브라티슬라바, 꼬시체, 프레소브, 니트라, 질리나 등
민 족	슬로바키아인(85.8%), 헝가리인(9.7%), 집시(1.7%), 기타(2.8%)
언 어	공용어: 슬로바키아어, 상용어: 헝가리어, 영어, 독일어
종 교	카톨릭(68.9%), 개신교(8.9%), 희랍정교(4.1%)
건국일	1993년 1월 1일(체코슬로바키아 공화국에서 분리독립)
정부 형태	내각책임제 / 비례대표제
국가 원수	이반 가슈파로비치(Ivan Grasperovic) 대통령 로베르트 피초(Robert Fico) 총리 - 실권자

* 자료: KOTRA

- 정식 국가 명칭은 슬로바키아공화국(The Slovak Republic, 현지어로는 슬로벤스카 레푸블리카). 제2차 세계대전 후 체코와 함께 사회주의공화국이 되었다가, 1993년 1월 1일 체코공화국에서 분리 독립하여 슬로바키아공화국이 됨
- 국회는 단원제, 정부 형태는 의원내각제, 2012년 3월 선거에서 150석 중 83석을 차지한 로베르트 피초가 이끄는 중도좌파의 사회민주당 (Semr-SD)이 독립 이후 최초로 단일정당으로 정부를 구성하여 2016년의 정기선거까지 안정적으로 집권할 것으로 전망
- 2004년 5월 1일 유럽연합(EU, European Union)에 가입, 2016년에 6개월 임기의 EU 의장국이 될 것으로 예상

2

경제 일반동향

□ 경제 동향 및 경제성장률

- 유럽중앙에 위치한 지리적 장점을 활용해 서유럽과 동유럽의 가교역할을 하며 2008년 하반기 글로벌 위기 이전 유로존에서 가장 빠른 경제성장을 보여 Tatra Tiger(타트라의 호랑이)로 불림
- 2000년대 들어 투자인센티브제도 및 단일세제(Flat Tax)가 도입되고 친기업적인 노동법 개정으로 경영환경이 크게 개선
- 외국인 제조업 투자를 통한 경제개발 정책으로 인한 부자재수입·완제품수출의 전형적인 수출 주도형 무역 구조로 외국인 투자는 자동차산업, 전자산업, 철강 등 제조업분야에 집중되어 고용 및 수출을 증가
 - PSA(Peugeot Citroen)와 기아자동차가 생산공장을 설립하며 2010년까지 총 85만대 이상의 자동차 생산
 - ※1인당 자동차 생산대수에서 세계 1위
 - 삼성전자, 소니, 파나소닉 등 글로벌 전자기업들의 생산투자 진출이 지속되며

전기전자 산업부문의 매출규모가 크게 성장하여 자동차산업과 2대 산업으로 자리잡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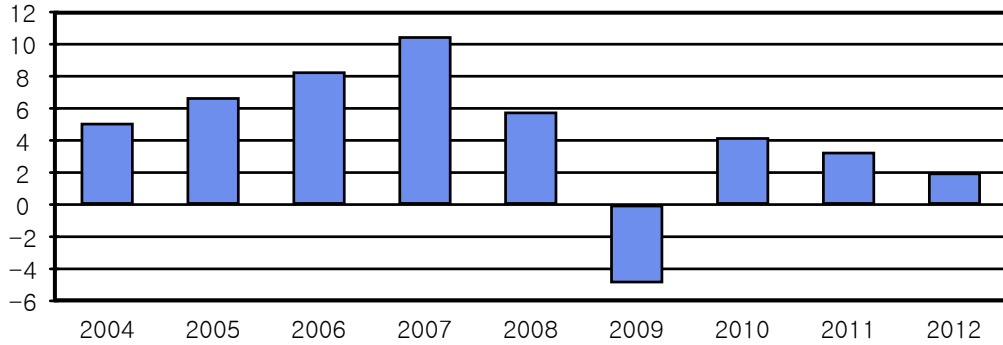
■ 주요 산업별 GDP 비중 ■

구 분(%)	2008	2009	2010
농림어업	3.8	3.5	3.5
광업	0.5	0.5	0.5
제조업	20.9	17.7	18.8
전기 · 가스 · 수도업	4.7	5.0	4.1
건설업	8.8	8.6	8.2
도·소매업	14.3	14.4	14.0
호텔 · 요식업	1.2	1.2	1.2
운송 · 창고업	6.6	6.4	6.8
금융업	2.9	3.6	3.4
부동산업	12.9	13.7	14.0
기타	13.5	15.8	16.4

* 자료: KOTRA, 슬로바키아 통계청

- 외국인 직접투자(FDI, Foreign Direct Investment)로 인한 자본 유입이 많은 반면 주식시장 투기나 부동산 거품은 심하지 않아 국제 금융 위기의 직접적인 영향은 없었으나, 금융 위기가 실물 분야로 전이되면서 경제 성장이 둔화
- 2009년 경기침체 이후 국내외 수요감소로 인하여 경기가 위축되어 경제성장률이 -4.9%까지 떨어진 이후 조금씩 회복되어 2012년 기대 이상의 경제성장을 이루었으나 정부의 재정안정을 위한 정책으로 국내 소비 및 경제 성장이 위축

■ 2004년 이후 경제성장률 ■



연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경제성장률(%)	5.1	6.7	8.3	10.5	5.8	-4.9	4.2	3.3	2.0

* 자료: 한국경제연구원(KERI Brief)

□ 대외거래

- 수출 주도형 무역구조로 인해 해외시장 의존도가 높으며 특히 유럽연합 지역에 대한 수출이 전체 수출의 85.2%, 유럽연합 지역에서의 수입이 전체 수입의 67.1%를 차지
- 1993년 독립이후 2009년 수출은 전년도에 비해 19.8% 감소, 수입은 23.4% 감소로 처음으로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함. 2010년 이후 주요 수출국가의 수요증가에 따라 수출이 증가됨

【경제 지표 개괄】

(2013. 03. 30 기준)

GDP	714억 63백만 유로(2012년)			
실지경제성장률	3.3%(2011년), 2%(2012년)			
1인당 GDP	18,130 유로(2012년)			
실업률	13.5%(2010년), 14.4%(2011년), 14.5%(2012년)			
물가상승률	3.9%(2011년), 3.7%(2012년)			
화폐단위	유로(2009.1.1 도입)			
환율	1유로=US\$ 1.2805 (2013.3.29 기준)			
외채	US\$ 688억(2011년), US\$ 671억(2012년)			
외환보유고	20억16만유로(2012년 6월)			
산업구조	1차산업(3.7%), 제조업(20.0%), 건설업(8%), 전기·가스·수도(4.2%), 서비스업 및 기타(64.1%) (2010년)			
교역규모	○ 연도별 규모현황 (단위:유로)			
		수출	수입	무역흑자
	2010	487억	486억	1억 3,800만
	2011	564억	540억	24억 4,000만
	2012	628억	592억	36억
교역품	○ 수출: 자동차, 전기·전자제품, 기계류, 화학제품 ○ 수입: 자동차, 전기·전자제품, 기계류, 원유, 철강			

* 자료: KOTRA

3

우리나라와의 관계

□ 체결협정 및 투자현황

(2013. 03. 30 기준)

체결협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교 관계 수립(93.1.1) ○ 사증면제교환각서(95.7.15 발효) ○ 이중과세 방지 협정(95.7.15 발효) ○ 투자보장협정(06.2.7 발효) ○ 운전면허 상호인정협정(07.11.23 발효) ○ 문화, 교육 및 관광 협력협정(07.11.27 발효) ○ 사회보장협정(10.3.1 발효) ○ 대한민국과 유럽공동체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FTA) (11.7.1 발효)
투자교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 슬로바키아 투자(2012년 12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법인수: 90개사 - 총 투자금액 누계: US\$ 11억 8,053만 ○ 슬로바키아의 대한투자: 없음
교민	약 1,318명(2011년 외국인 경찰서 등록자 기준)

* 자료: KOTRA

- 우리나라의 유럽 최대 생산투자 진출국으로 삼성전자, 기아자동차 등 대기업과 관련 협력사 90여개 업체 진출
- 삼성전자는 2002년 갈란타에 진출 후 2006년 3월 트르바나에 3.2억 유로를 투자하여 LCD 모듈공장 건설한 후 연간 매출액이 40억 유로로 슬로바키아 3위의 기업으로 성장
- 기아자동차는 체코의 현대자동차 현지법인과의 시너지 효과로 투자 우수사례로 꼽힘

□ 한국의 對 슬로바키아 수출입실적

■ 한-슬로바키아 수출입 현황 ■

(단위: 백만USD, %)

구 분		2008	2009	2010	2011	2012
수출	금액	3,462	3,137	4,424	4,103	4,624
	증가율	27.9	-934	14.0	-7.2	12.7
수입	금액	81	65	100	141	170
	증가율	14.4	-21.2	56.5	41.5	20.8
무역수지		3,381	3,072	4,32	3,962	4,454

* 자료: 한국무역협회, 슬로바키아 통계청

□ 수출입 동향)

- 2012년 우리의 대 유럽수출 중 3대 수출국, 대 유럽 무역수지 흑자의 약 50%를 슬로바키아 무역수지 흑자가 차지
- 양국간의 교역은 1993년 1,800만 달러에서 1996년에는 1억 6,000만 달러로 3년 만에 약 10배로 빠른 성장을 보였으나 1997년 이후 우리나라의 금융위기와 슬로바키아의 경기침체 영향으로 2001년까지 대폭 축소
- 삼성전자의 진출과 함께 2002년부터 증가세로 전환하여 2003년 전년 동기 대비 534%나 급증, 기아자동차가 진출하기 시작한 2004년 전년 대비 224.8% 증가하는 등 우리기업들의 투자에 따른 생산설비의 및 부품 등의 수출 급증의 영향으로 빠른 성장
- 2007년 기아자동차의 자동차부품 수출급증과 삼성전자의 평판디스플레이 등 전자부품의 수출호조가 지속되며 수출이 전년대비 113.6% 증가하였으나 2008년 금융위기의 여파로 기아자동차의 생산이 위축되며 전체 수출이 전년대비 28% 증가, 2009년도에는 전년대비 9.4% 감소

1) 자료: KOTRA

- 2009년 하반기 이후 글로벌 경제가 서서히 금융위기에서 벗어나며 서유럽 시장의 자동차 및 전자제품에 대한 수요가 회복되며 우리나라의 對슬로바키아 수출도 회복세를 보임
- 2010년 수입도 최대 품목인 자동차를 비롯한 대부분의 품목에서 호조를 보여 전년대비 56.5% 증가, 2011년 다시 유로존 위기로 인해 전년보다 7.1% 감소한 41억달러를 수출함
- 2012년 삼성 휴대폰 및 전자제품의 호조와 기아자동차의 생산 증가로 전년대비 12.1% 증가한 46억 달러 수출

□ 주요 수출입 품목

■ 한국의 對슬로바키아 수출품목 ■

순위	품목명	2011		2012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1	자동차	26	41.5	170	20.8
2	기계요소	22	13.5	41	56.8
3	자동차부품	14	-11.1	15	5.5
4	고무제품	9	3354.4	13	43.2
5	원동기 및 펌프	9	-9.5	11	24.5
6	합금천선철 및 고철	13	409.1	10	-24.4
7	정전기기	4	406.8	8	80.7
8	철강관 및 철강선	0	-26.2	4	1,962
9	전선	2	56.0	4	70.2
10	계측제어분석기	3	116.6	4	43.5

* 자료: 한국무역협회(2013.3)

▣ 한국의 對슬로바키아 수입품목 ▣

순위	품목명	2011		2012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1	자동차	26	41.5	170	20.8
2	기계요소	22	13.5	41	56.8
3	자동차부품	14	-11.1	15	5.5
4	고무제품	9	3354.4	13	43.2
5	원동기 및 펌프	9	-9.5	11	24.5
6	합금천선철 및 고철	13	409.1	10	-24.4
7	정전기기	4	406.8	8	80.7
8	철강관 및 철강선	0	-26.2	4	1,962
9	전선	2	56.0	4	70.2
10	계측제어분석기	3	116.6	4	43.5

* 자료: 한국무역협회(2013.3)

□ 한-슬로바키아 최근 관계

○ 2013.1.1 한-슬로바키아 수교 20주년



1993.1.1 수교한 이래 양국은 수교 20주년을 기념하며 한국국회의원회관에서 사진전 등 다양한 행사 개최



우정사업본부와 슬로바키아우정은 양국의 공연예술인 한국의 '판소리'와 슬로바키아의 전통 공연예술인 '루츠니차'를 소재로 공동우표 발행(13.5.31)

○ 2013.4.5 한국 경주시-슬로바키아 니트라시 우호의향서 체결



양국의 수교20주년을 맞아 한국의 경주시와 슬로바키아의 니트라시의 양국지방정부간 첫 의향서 체결로 각 시의 경제, 문화 등의 교류 기대

제 2 장 조세제도²⁾

1. 슬로바키아 세제 개관
2. 법인세법
3. 개인소득세법
4. 부가가치세법
5. 특별소비세(Excise Tax)
6. 지방세
7. 사회보장기여금(Social Security Contributions)
8. 관련 세법

2) SARIO "TAXES AND SOCIAL SECURITY", IBFD "CORPORATE TAXATION" "INDIVIDUAL TAXATION"
참고

1 슬로바키아 세제 개관

□ 일반사항

- 2004.5.1 슬로바키아가 EU에 가입함에 따라 슬로바키아 세법의 주요 내용은 EU 세법과 조화를 이루게 됨
- 슬로바키아 세법은 슬로바키아공화국 전체 영토에 적용되며, 그 적용에 있어 예외사항이 있는 지역은 없음

□ 세법개정 연혁

<2004년 세제 개혁>

- 2004년 세제 개혁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세법의 비효율성 제거, 모든 종류의 소득을 과세함으로써 세제 형평성 제고를 목적으로 단행
- 법인·개인소득세율 19% 단일세율로 변경
- 이중과세를 제거하기 위해서 2004.1월 배당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폐지하고, 2005.1월 부동산양도세 폐지
- 2005.1월 도로세(Road Tax)를 자동차세(Motor Vehicle Tax)로 대체

<2013년 세법 개정>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개인소득세율을 19%~25% 누진세로 변경함으로써 2004년 이후 유지되던 단일세율 포기
- 법인소득세율을 19%에서 23%로 인상
- 특별소비세(Excise Tax)과세대상을 확대

□ 세금 종류

- 국세
 - 직접세 : 개인소득세, 법인소득세
 - 간접세 :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 지방세

- 부동산세, 애완견세, 공공장소 이용세, 자동판매기세, 슬롯머신세, 도시 내 역사공원 입장세, 원자력시설세, 숙박세, 폐기물세, 자동차세

□ 납세의무자 : 거주자

○ 개인

- 슬로바키아에 항구적 주거(Permanent Residence)가 있는 자 또는 1역년 중 183일 이상 슬로바키아에 거주하는 자를 거주자로 규정

○ 법인

- 슬로바키아에 소재하거나 실질적 관리장소가 슬로바키아에 있는 모든 형태의 법인을 거주자로 규정

□ 세무등록

- 슬로바키아에서 영업허가를 얻은 납세자는 30일 내에 지역 세무서에 등록
- 등록사항 변경이 있을 경우 15일 이내에 세무서에 연락하여 상담
- 과세소득이 처음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소득발생 사실을 세무서에 고지

2 법인세법

매월 납부하는 예정납부(Advanced Payment) 제도와 부과
제척기간 등 우리와 상이한 세법에 대한 이해 필요

가. 법인세의 개요

□ 법인의 납세의무

- 법인은 법인소득세, 사회보장세, 토지세, 건물세, 자동차세, 부가세 납부 의무를 짐
 - 법인소득세는 소득세법(Income Tax Law)에 규정되어 있으며, 법인소득세 과세와 관련한 행정절차는 행정절차법(Tax Administration Law)에 따름
 - 법인의 소득은 법인소득세 신고 과세표준에 포함되어 과세되거나, 원천징수 대상 소득으로 분류되어 과세
 - 법인소득세는 법인(주식회사, LLC, 유한책임파트너십, 협동조합) 및 개인으로 과세되지 않는 단체가 납세의무자
 - 무한책임파트너십(General Partnership)은 완전 도관체로 법인소득세 납세의무자가 아니며, 파트너십의 소득을 분배받는 파트너들의 소득으로 과세됨. 단, 무한책임파트너십의 특정 소득에 대해서는 원천징수
 - 유한책임파트너십(Limited Partnership)의 소득 중 무한책임사원(General Partner)에게 분배되는 소득은 무한책임파트너십과 동일한 방식으로 과세

□ 납세의무자

- 실질적 관리장소가 슬로바키아 내에 있는 거주자인 법인은 국내외 원천 소득에 대해 법인소득세 납세의무를 짐
 - * 실질적 관리장소: 사업상 의사결정 및 관리·감독이 행해지는 장소를 의미

- 그 외의 법인은 국내 원천소득에 대해서 납세의무를 짐

□ 과세 소득(Taxable Income)

- 과세 소득은 소득세법(Income Tax Law)이나 조세조약에 따라 과세되지 않도록 규정된 소득을 제외한 소득을 뜻함
- 자본이득에 대한 별도의 과세체계가 없으며, 법인소득세 과세 소득으로 합산하여 신고함
- 장기공사에 대한 소득세법 상 별도의 규정은 없으나, 회계상 수익인식 방법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 소득으로 신고

□ 비과세 소득

- 법인소득세 과세된 소득을 원천으로 한 배당소득(2004.1.1 전 발생한 소득을 원천으로 한 경우는 과세)
- 2004.4.1 이후 슬로바키아 자회사가 EU 내 모회사에게(또는 EU 자회사가 슬로바키아 모회사에게) 지급하는 배당소득(2004.1.1 전 발생한 소득을 원천으로 한 경우 포함). 단, 모회사가 배당시점에 자회사의 주식을 25% 이상 직접 보유한 경우에 한함
- 기부나 상속을 통해 받은 소득
- 2004.1.1 이후부터 권리를 가진 주주가 받는 청산 잔여소득 배분금

□ 비과세 단체(Non-Taxable Entities)

- 비과세 단체는 우리의 비영리법인과 유사한 개념으로, 정치조직, 전문가단체, 시민단체, 재단, 교회 등 단체 설립의 고유목적과 관련한 소득은 법인소득세 면제
- 비과세 단체의 자산의 양도에서 발생하는 소득, 임대소득, 광고수입 등은 수익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과세대상이며, 원천징수의 대상

과세기간

- 일반적으로 1역년
- 법인의 경우 1역년과 상이한 연속한 12개월을 회계연도로 하여 이를 과세기간으로 할 수 있음

부과제척기간(Statute of Limitations)

- 일반적인 부과제척기간은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이며, 결손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7년
- 과세당국이 고지하는 경우 고지일이 속하는 다음해 1월1일부터 부과제척기간이 새로이 시작
 - 신고기한으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새로운 고지를 할 수 없음

예정납부(Advanced Payment)

- 법인소득세를 중간예납과 확정신고 시 납부하는 우리나라와 달리 예정납부를 통해 매월 납부하여야 하므로 자금운영계획 수립 시 주의
- 법인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하는 납세자의 직전연도 납부세액이 €16,596.96을 초과하는 경우, 직전 납부세액과 동일한 세액을 12개월로 나누어 매월 말일 예정납부
 - 외국납부세액 등이 있는 경우 예정납부세액에서 공제 가능
 - 예정납부한 세액이 총납부세액을 초과한 금액은 다음 연도 예정납부세액에 충당되나, 납세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환급
- 직전연도 납부세액이 €1,659.70을 초과하나 €16,596.96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직전연도 납부세액의 25%를 4회로 나누어 매 분기 말일 납부
- 직전연도 납부세액이 €1,659.70 이하인 납세자, 신규 개업 납세자는 예정납부 의무 없음
- 과세당국은 납세자의 요청에 따라 예정납부세액을 조정할 수 있음
- 비거주자인 법인의 고정사업장도 예정납부 의무 있음

나. 자산 및 부채평가

□ 재고자산

- 일반적으로 재고자산은 선입선출이나 평균법에 따라 평가
 - 재고자산이 주식이면 가중평균법에 의해 평가
- 결산 시점에 재고자산의 미래 경제적 가치가 장부가액보다 낮은 경우 순실현가능가치로 평가

□ 감가상각 자산

- 유·무형 감가상각 자산은 자산에 따라 취득가액, 대체가격(Replacement Price), 증가된 취득가액(Increased Acquisition Price), 생산비용, 담보채권금액(the Amount of the Secured Demand note), 잔존가액으로 평가
- 구매한 자산은 취득가액으로 평가
 - 취득가액에는 부대비용 포함하며, 부가가치세 등록 사업자가 아니거나, 매입 부가가치세를 공제 받지 않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취득가액에 포함
 - 특정 조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해 개인적 용도로 구입한 자산을 사업용으로 전환하거나 개인으로부터 자산을 무상으로 이전받는 경우에도 취득가액으로 평가
- 일반적으로 개인적 용도로 구입한 자산을 사업용으로 전환하거나 개인으로부터 자산을 무상으로 이전받는 경우에는 대체가격으로 평가
- 감가상각 자산에 증축, 현대화 등 기술적인 개선을 한 경우 해당 비용을 취득가액에 가산
- 직접 제조한 생산품은 제조원가로 평가
- 담보채권에 따라 자산을 양수한 경우 담보채권금액으로 평가

□ 비상각자산

- 비상각자산은 취득가액, 대체가격, 생산비용, 담보채권금액으로 평가

- 유가증권은 취득가액으로 평가
- 법인에게 무형자산을 출자한 경우 이는 비상각자산으로 취급되며 대체가격으로 평가함

부채

- 현재가치가 아닌 명목가치로 평가

외화자산 및 부채

- 외화자산 및 부채는 Euro화로 환산하여 장부에 기장하여야 함
- 기말 외화자산 및 부채의 외화환산손익은 과세표준 계산시 반영되어야 하나, 세무당국에 신고한 경우 반영하지 않을 수 있으며, 상환 시 외환차손익이 발생하였을 때 반영할 수 있음
- 환율은 유럽중앙은행의 공식환율을 이용하여야 하며, 매월 평균환율을 이용하거나, 수익이나 비용이 발생한 날 환율을 이용하여야 함
- 근로소득의 환산은 연간 평균환율이나 소득이 발생한 달의 평균환율을 이용하여야 하며, 외국납부세액의 계산에도 동일한 환율을 이용하여야 함
- 외화예금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은 소득이 납세자의 계좌에 입금된 날 환율을 이용

다. 비용

개요

- 과세 소득을 발생시키거나, 확정하거나, 유지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은 공제불가 비용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는 한 공제 가능하며, 관련 증빙을 보관하여야 함
- 일정 비용(계약 상 위약금 등)은 지급 시점에 비용 공제가 가능
 - 지급 받는 상대 납세자는 수령 시점에 과세소득으로 신고
- 공제 가능 비용인지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자가 부담

□ 공제 가능 주요 비용

○ 감가상각비

- 감가상각비는 세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공제 가능한 비용
- 정액상각과 가속상각을 모두 인정
- 무형고정자산은 최고 5년의 범위 내에서 상각
- 2004.1.1부터 금융리스 자산에 대해서 상각 가능

■ 감가상각률 ■

○ 정액상각법

자산 종류	내용연수	상각률
컴퓨터, 자동차, 프린터	4년	1/4
건설용 기계 및 장비, 농업용 기계, 특정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자산	6년	1/6
일부 기계 및 장비, 특수 기술 장비, 공조장치, 지상 철구조물	12년	1/12
파이프라인, 건물, 전기 및 통신 네트워크	20년	1/20

○ 가속상각법

자산 종류	계수(Coefficient)		
	첫째 연도	후속 연도	증가 잔존 가액
컴퓨터, 자동차, 프린터	4	5	4
건설용 기계 및 장비, 농업용 기계, 특정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자산	6	7	6
일부 기계 및 장비, 특수 기술 장비, 공조장치, 지상 철구조물	12	13	12
파이프라인, 건물, 전기 및 통신 네트워크	20	21	20

○ 가속상각법을 이용한 감가상각비 계산 방법

$$\text{첫째연도} = \text{취득가액} / \text{첫째연도 계수}$$

$$\text{후속연도} = 2 \times \text{잔존가액} / (\text{후속연도 계수} - \text{경과 연수})$$

- 고용인 급여 등 인건비
 - 임금 및 급여는 공제 가능. 임금 및 급여에 복리후생비포함
 - 파트너 및 협동조합원에게 지급하는 급여 공제 가능
 - 고용인을 위해 지출하는 의무적인 의료보험료 및 사회보장 기여금 공제 가능
- 이자 비용
 - 사업과 관련한 이자비용 공제 가능하나, 지연이자는 공제 불가
- 경영자문료 등 수수료
 - 컨설팅, 기술자문, 경영자문 등 비용은 공제 가능하나, 특수관계자 간 지급 비용은 통상의 시장가격을 한도로 인정
 -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 있음
- 광고선전비
 - 사업활동, 상품, 서비스, 트레이드마크 등의 홍보를 위해 사용한 비용은 공제 가능하나, 판촉물 구입 비용은 개당 €16.6 이하일 경우에만 공제 가능
- 세금
 - 부동산세, 자동차세 등 법인소득세를 제외한 세금은 공제 가능하며, 매입세액 공제받지 않은 부가가치세도 공제 가능
- 리스 비용
 - 리스 비용은 기간에 따라 안분하여 공제 가능
- 벌금 등
 - 일반적으로 벌금 등은 공제 불가능하나, 계약에 따른 지체상금 등은 지급 시점에 공제 가능
- 재해 손실
 - 자연재해에 따른 손실은 보상금을 초과한 부분까지 공제 가능하나, 그 외의 재해 손실은 보상금 지급금액을 한도로 공제 가능
- 부실채권 상각비(Bad-debt Write-offs)
 - 부실채권 상각비는 파산절차 진행 중인 채무자의 자산이 부채보다 적다는 법원의 판결이 있고, 부실채권의 장부가액이 채권 당 €331.94 이하인 경우 공

제 가능

- 임원 급여, 사용료, 차량연료비 등 그 외 소득 발생과 관련된 비용

공제 불가능 비용

- 과세되지 않는 소득과 관련된 비용
- 배당금
- 기부금
- 일반적인 벌금
- 보상금 초과한 재해손실(자연재해 제외)
- 자산의 기능 개선 비용
- 법인소득세
- 배기가스 배출 부담금
- 유흥비
- 조건 미충족 부실채권 상각비
- 준비금 및 충당금(Reserves and Provisions)

라. 자산소득(Capital Gains)

개요

- 자산소득은 유가증권, 법인의 출자지분, 고정자산 매각을 통해 실현되는 소득을 뜻하며, 슬로바키아 세법 상 별도로 과세방법이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법인 소득세 과세대상 소득으로 과세
- 자산소득은 매각금액에서 취득가액과 감가상각비를 공제하여 계산
- 자산소득에 대한 과세이연은 합병 등에만 적용

자산 매각 손실(Capital Losses)

- 유가증권의 취득가액은 유가증권 매도가액을 한도로 공제 가능(금융기관을 포함한 유가증권 딜러는 제외)
- 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유가증권은 매입·매도가액이 거래 당일 고시가액과 10% 이내로 차이날 경우에만 취득가액 공제 가능
- 파생상품 매도에 따른 손실은 인정되지 않음(은행, 보험회사 제외)
 - 헤지를 위한 파생상품의 경우 공제가능
- LLC의 출자지분 매각에 따른 손실 공제 불가능

비과세 자산소득

- 파산 절차 시 자산 매각에서 발생한 소득
- 유한책임파트너십과 LLC의 출자자가 지분 관계를 청산함으로써 대가로 지급 받는 금액
- 청산 시 주주가 지급 받는 초과 이익
- 주식회사가 자기주식을 매입함으로써 얻는 이익

마. 법인세 신고 및 납부 등

결손금(Losses)

- 결손금은 7년간 이월공제(2010.1.1 전에 발생한 결손금은 5년)
- 합병소멸 법인 등의 결손금은 합병존속 법인이 승계하여 공제 가능
 - 합병 등의 목적이 조세회피일 경우에는 승계 불가능
- 결손금 소급공제는 불가능

법인소득세율

- 2012.12.31 이전 발생 소득 : 19%

- 2013.1.1 이후 발생 소득 : 23%
- 2012년 개시하여 2013년 종료한 사업연도의 법인소득세는 안분하여 계산

□ 소득별 원천징수 대상 여부

- 배당소득
 - 2004.1.1 이후 발생한 소득을 원천으로 거주자인 법인에게 지급하는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음
- 이자소득
 - 거주자인 법인에게 지급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19%의 소득세를 원천징수
 - 원천징수로 이자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종결
- 사용료소득
 - 거주자인 법인에게 지급하는 사용료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으며, 소득을 지급받는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에 사용료소득을 포함하여 신고하여야 함
- 임대소득
 - 거주용 건물을 사업용으로 임대하고 얻는 소득은 원천징수 대상임

□ 법인세신고

- 과세기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법인세 신고서 제출
- 신고기한 연장신청을 할 수 있으며, 법정 신고기한 종료 15일 전까지 신청서 제출하여야 하며, 승인 여부는 세무당국에서 결정
- 연결납세제도(Group Taxation)가 없으므로, 납세자별로 각각 신고서 제출하여야 함
- 신고시 무한책임파트너십(General Partnership)은 완전 도관체로, 유한책임파트너십(Limited Partnership)은 부분 도관체로 취급
- 신고기한 내 오류 발견에 따라 재신고하는 경우 가산세 부과되지 않으며, 최종 신고를 정상신고로 인정
- 신고기한이 지난 후 오류 발견 시 수정신고 가능하며 가산세 부과

- 특정 범위에 해당하는 납세자 전자신고 가능
- 법인은 법인세 신고 시 재무제표를 첨부하여야 함

□ 납부 및 환급

- 납부
 - 법인소득세 신고기한이 납부기한
 - 신고한 세액이 세무서가 계산한 세액보다 적을 경우 세무서는 계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납세자에게 통지
 - 대부분의 세액은 예정납부(Advanced Payment)에 의해서 납부
 - 원천징수세액은 소득을 지급한 달 다음달 15일 이내에 납부
- 환급
 - 예정납부한 세액이 총납부세액을 초과한 금액은 다음 연도 예정납부세액에 충당되나, 납세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환급
 - 환급 시 납세자가 납부하여야 할 다른 세액이 있는 경우 우선 충당
 - 납세자는 납부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환급 요청하여야 하며, 세무서는 납세자가 환급을 요청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환급
- 가산세
 - 기한 내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유럽중앙은행 고시 이자율의 4배의 율로 가산세를 부과하며, 최저 가산세율은 연 15%로 일할 계산
 - 기한 내 신고하지 않은 경우 유럽중앙은행 고시 이자율의 3배의 율로 가산세 부과, 최저 가산세율은 10%이며, 자진하여 기한 후 신고한 경우 가산세 50% 감면

□ 법인소득세 결정

- 납세자가 법인소득세를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한 경우 과세당국은 법인소득세를 경정·결정
- 경정·결정 시 당해 납세자의 정보뿐만 아니라 동종의 비교가능 업체의 정보를

이용하여 법인소득세를 결정할 수 있음

- 법인소득세와 관련하여 새로운 사실이 발견된 때에 납세자는 이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재경정·결정을 요청할 수 있으나, 과세당국의 재경정·결정 기한에 대한 규정 없음

□ 불복

- 과세당국의 경정·결정에 불만이 있는 납세자는 경정·결정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세무서에 불복신청을 할 수 있으며, 세무서는 불복을 스스로 인용하지 않는 경우 과세위원회(Tax Directorate)에 불복신청을 이관하며, 과세위원회의 결정이 최종 결정
- 납세자나 원천징수의무자는 과세당국의 어떤 행위에든 불만이 있는 경우 그 행위일로부터 8일 이내에 세무서에 이의제기(Objection)를 할 수 있으며, 세무서는 그 이의제기에 대한 결정서를 발부하며, 세무서의 결정서가 최종 결정

□ 관련 서류 보관 의무

- 일반적인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5년간 보관
- 부과척기간에 따라 결손 신고한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7년간 보관이므로 주의

□ 예규(Rulings)

- 일반 예규는 생산하지 않으나, 납세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특정 쟁점에 대한 개별적인 예규를 생산
- 납세자가 예규를 신청할 수 있는 경우
 - 비거주자의 고정사업장에 귀속될 소득금액 결정 관련 사항
 - 이전가격 산정방법에 관한 사항
 - 특정 경우에 예정납부하여야 할 금액에 관한 사항

3 | 개인소득세법

납세의무

- 거주자
 - 전 세계 발생 소득에 대해 개인소득세 납세의무 있음
- 비거주자
 - 슬로바키아 원천소득(급여, 임대소득, 이자, 배당)에 대해 개인소득세 납세의무 있음

개인소득세율

- 2004년 세제개혁 이후 2012년까지 적용하던 19% 단일세율 폐지
- €39,600까지는 19%, €39,600 초과 소득에 대해서는 25%

과세기간

- 1역년
 - 개인납세자는 과세기간을 선택할 수 없음

과세소득

- 근로소득
 - 급여, 임금 및 기타 근로자로서 수령하는 후생복지수당 포함
- 사업소득
 - 영업허가를 받은 자영업 소득
 - 농업, 가금류사육업, 수자원관리(Water Resource Management) 소득
 - 별도 법에 따른 전문직업 소득
 - 파트너십이 무한책임사원(General Partner)에게 배분하는 이익
 - 예술활동 소득

- 산업상·사업상의 로열티 및 저작권료(Copyrights)
- 전문 인적용역소득 및 번역료
- 사업목적으로 사용되는 자산에서 얻는 소득
- 사업용 자산 양도소득
- 사업용 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 사업 양도에 따른 자산소득
- 채무면제이익
- 자본소득
 - 만기 유가증권 및 자사주(Share Option)에서 발생하는 소득
- 기타소득
 - 일시적 활동에서 발생하는 소득
 - 일시적 농업, 임업, 수자원관리 소득
 - 개인용 동산·부동산 및 유가증권 양도소득
 - LLC, LP 및 협동조합 지분 양도소득
 - 파생상품 거래에 따른 소득
 - 스톡옵션 양도소득
 - 상속받은 지적재산권 및 이와 유사한 자산에서 발생하는 로열티
 - 자발적 가입 연금소득 및 자발적 위자료
 - 복권 당첨금 및 상금

□ 비과세소득

- 의무가입 보험·연금의 보험금 및 연금 수령금액
- 지역 노동사무소(Local Labour Office)에서 수령한 금액
- 의무가입 보험 등을 해외에서 불입하고 받는 보험금액
- 법적 위자료 및 장애인이 받는 복지급여
- 군인의 급여, 해외복무에 따라 외화로 받는 군인의 급여, 평화유지군으로써 받는 급여

- 군인 연금 수령금액
- 배상금(배상금으로 수령하는 보험금 포함)
- 국내·외에서 수령하는 장학금
- 국가 운영 복권 당첨금
- 과다부과에 따른 세금환급금의 가산금
- 부동산임대소득, 일시적활동·일시적 동산임대에 따른 소득 중 €500 미만
- €350 미만의 상금
- 공공단체나 사설단체로부터 수령한 기부금

□ 비과세 자본소득

- 동산의 양도에 따른 소득. 단 사업용 동산은 취득 후 5년 초과하여 처분한 경우 적용
- 2010.12.31 이전 취득한 거주용 부동산(부속 토지 포함)을 취득일로부터 5년 후 최소 2년 이상 거주 후에 처분함에 따른 소득
- 주식을 처분하거나 스톡옵션을 통해 얻는 연간 €500을 초과하지 않는 소득
- 출자지분(Share Certificates)을 처분하여 얻는 소득
 - 해외에 근거가 있는 개인 또는 법인에게 양도한 경우 제외

□ 원천징수

- 개요
 - 원천징수 대상 소득은 19%의 단일세율로 원천징수하며, 개인소득세 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음(완납적 원천징수)
 - 소득을 지급하는 날 원천징수
 -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을 지급한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납부
- 원천징수 대상 소득
 - 사업과 관련없는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
 - 신문·방송 특파원이 수령하는 로얄티

- 민간 보험회사에 가입한 생명보험 · 연금보험 수령금액
(불입한 기여금 제외)
- 정부 보조 연금보험 수령금액
- 특정 채권, 투자쿠폰 등에서 발생하는 소득

□ 소득공제

1) 본인공제

- 과세표준이 해당연도 최저생계비의 100배 이하면 최저생계비의 19.2배 공제
* 2012년 최저생계비 €194.58/월 → €194.58×19.2=€3,735.94
- 과세표준이 해당연도 최저생계비의 100배를 초과하면 최저생계비의 44.2배와 과세표준의 1/4의 차액을 공제, 차액이 '0'이하이면 소득공제 불가

2) 부양 배우자 공제

- 과세표준이 해당연도 최저생계비의 176.8배 이하이면
 - 배우자가 소득이 없는 경우, 최저생계비의 19.2배 공제
 - 배우자가 최저생계비의 19.2배 미만의 소득이 있는 경우, 최저생계비의 19.2배와 배우자의 소득금액의 차액 공제
 - 배우자가 최저생계비의 19.2배를 초과하는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공제 불가
- 과세표준이 해당연도 최저생계비의 176.8배를 초과하면서,
 - 배우자가 소득이 없는 경우, 최저생계비의 63.4배와 과세표준의 1/4의 차액을 공제
 -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최저생계비의 63.4배에서 과세표준의 1/4와 배우자 소득금액 모두를 뺀 차액을 공제

□ 세액공제

- 부양 자녀 1명 당 월 €21.03을 최종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

□ 신고

- 일반적으로 신고기한은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3월31일
(납부기한 동일)
- 국외원천소득이 있는 경우 당초 신고기한까지 신청하면 3개월 연장가능하며,
연장신고기한까지 서면신청하면 추가 3개월 연장가능
- 납세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사망일로부터 3개월 내에 신고
- 완납적 원천징수 소득만 있는 납세자는 신고의무 없음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고용주에게 요청하여 연간 소득에 대해 정산한 경우 신고의무 없음

4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개정으로 부정환급에 대한 처벌 강화

가. 부가가치세의 개요

□ 개요

- 2004년 EU에 가입함으로써 슬로바키아 부가가치세법은 EU의 6차 지시서 (Directive)에 맞추어 개정됨으로써 다른 EU 국가의 부가가치세 제도와 매우 유사
- 전단계세액공제법을 채택하여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납부세액 계산
- 모든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각각 등록하여야 함

□ 과세대상

-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국내에서 대가를 받고 재화 공급
-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국내에서 대가를 받고 용역 공급
- 다른 EU 국가에서 국내로 대가를 받고 재화를 공급(역내거래, Intra-Community Acquisition)
- 슬로바키아 국내로 재화를 수입
 - * 나. 과세거래에서 상술

□ 과세기간

- 원칙적으로 과세기간은 1개월
- 납세의무자가 된 달로부터 12개월이 지나고, 직전 12개월 수입금액이 €100,000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매 분기를 과세기간으로 선택 가능

□ 납세의무자

- 목적과 결과에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경제활동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
- 경제활동이란 소득을 발생시키는 활동
- 경제활동에는 제조업, 용역공급업, 광산업, 건설업, 농업, 자유직업, 지적창작활동, 스포츠활동 등 포함
- 정부, 지방정부, 정부나 지방정부가 100% 출자한 공공단체가 고유목적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가 아님

□ 등록(Registration)

- 직전 12개월 매출액이 €49,790을 초과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등록(Register for VAT)을 하여야 함
- 다음의 납세자는 매출액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 등록을 하여야 함
 - 양수도 계약을 통해 사업을 양수한 법인 또는 개인
 - 슬로바키아에서 부가가치세 과세 사업을 영위하는 외국법인 또는 외국인

- 슬로바키아 내에서 부가가치세 등록을 하지 않은 개인에게 €49,790 초과한 상품을 원거리 판매하는 외국법인 또는 외국인
 - 사적 사용 용도로 구입하는 개인에게 특별소비세가 부과되는 상품을 원거리 판매하는 외국법인 또는 외국인
 - 다른 EU국가로부터 1역년에 €13,941.45를 초과하여 상품을 구매한 부가가치세 미등록 자
- 의무적 등록 조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자발적으로 부가가치세 등록 가능
 - 관계 회사들이 하나로 부가가치세 등록할 수 있음
 - 등록하는 날부터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자로 간주

등록 폐지(De-Registration)

- 다음 요건에 해당할 경우 등록 폐지를 신청할 수 있음
 - 부가가치세 과세 사업의 폐지
 - 직접 12개월의 매출액이 €50,000에 미달
 - 원거리 판매를 하는 외국법인 또는 외국인이 해당 역년 매출액이 부가가치세 법 개정으로 부정환급에 대한 처벌 강화50,000에 미달하고 또한 직전 1역년 매출액이 €50,000에 미달
 - 다른 EU국가로부터 상품을 구매하는 자가 해당연도 구매금액이 €14,000에 미달하고, 또한 직전 1역년 구매금액이 €14,000에 미달

나. 과세 거래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는 거래

- 자산의 소유자로서 그 자산을 처분할 권리를 이전
 - 자산이란 유형자산인 동산과 부동산을 포함하며, 전기·가스·물·열·냉방 및 이와 유사한 무형자산과 명목가치와 다른 가액으로 거래되는 지폐·동전

을 포함

- 도급 계약 및 이와 유사한 계약에 따른 건물, 구조물 또는 그 일부의 공급
- 리스계약 중 최종 할부금 납부 시 소유권이 이전되는 재화의 공급
- 공공기관의 결정이나 법에 따라 대가를 받고 유형자산의 소유권 이전
- 사업상 목적으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의 사업용 자산의 일부를 다른 EU 국가로 이전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거래

- 산업 상 또는 다른 지식 관련 자산을 포함하는 무형자산의 소유권 이전
- 유형자산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부여
- 공공기관의 결정이나 법에 따른 용역의 공급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

- 재화가 공급된 날 또는 대가를 지급받은 날 중 빠른날
- 용역의 공급이 완료된 날 또는 대가를 지급받은 날 중 빠른날
- 부분적 또는 반복적으로 공급되는 재화나 용역은 공급 단위기간의 마지막 지불 요청일
- 일반적 기준에 따른 공급 장소가 없으면서 12개월을 초과하여 대가를 지급하기로 한 경우 공급이 끝날 때까지 매 12개월의 마지막 날
- 일반적 기준에 따른 공급 장소가 있고 12개월을 초과하여 대가를 지급하기로 한 경우 공급이 끝날 때까지 매 역년의 마지막 날
- 외국인인 납세의무자로부터 국내에서 납세의무자가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용역을 제공받는 날

재화의 수입

- 재화의 수입은 비EU 국가에서 EU 국가로 재화를 반입하는 것을 뜻함
- 수입재화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

- 관세 신고서에 포함된 재화의 관세 과세 가격
- 관세, 슬로바키아 밖에서 부과된 세금 등
- 포장비, 운반비, 보험료 등 관련 비용
- 관세가 면제되는 재화는 부가가치세도 면제
- 재화 수입의 공급시기
 - 관세 정책에 따라 물건이 반출된 날

□ 역내거래(Intra-Community Acquisition)

- 역내거래는 다른 EU 국가로부터 슬로바키아 국내로 소유자로서 재화를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이전하는 것을 뜻함
- 역내거래는 다음 조건을 충족할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 구매자가 납세의무자이거나, 납세의무자가 아닌 개인 또는 다른 EU 국가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인 외국인이고
 - 공급자가 대가를 받고 재화를 공급하는 다른 EU 국가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인 것
- 역내거래의 공급시기
 - 역내거래는 재화를 수취한 날로부터 15일째 되는 날과 인보이스 발행일 중 빠른날 공급된 것으로 봄

□ 공급장소

- 부가가치세는 슬로바키아 국내에서 발생한 거래에 부과되므로, 공급장소를 확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
- 1) 재화의 공급 장소
 - 운송이 필요한 재화는 운송이 시작되는 시점에 재화가 위치한 장소
 - 운송이 필요 없는 재화는 공급 시점에 재화가 위치한 장소
 - 설치나 조립이 필요한 재화는 설치나 조립 장소
 - EU 국가 내에서 여객운송 중인 항공기, 선박, 기차에서 공급되는 재화는 그 시발지

2) 용역의 공급 장소

- 공급 받는 자의 사업장 소재지
- 공급 받는 자가 고정사업장일 경우 고정사업장 소재지
- 공급 받는 자가 사업장이나 고정사업장이 없는 경우 공급 받는 자의 주소나 거소

3) 재화 수입의 공급 장소

- 재화 수입의 공급 장소는 EU 내로 재화가 반입되는 시점에 재화가 위치한 EU 국가

4) 역내거래의 공급 장소

- 역내거래의 공급 장소는 그 재화가 발송되는 시점에 위치한 장소

□ 영세율

- 수출하는 재화 등에는 영세율 적용
 - 다른 EU국가에 소재하는 등록된 구매자에게 공급하는 재화
 - EU 국가 외로 재화나 용역의 수출
 - 슬로바키아 내에서 공급된 경우 면세될 제화의 수입
 - 국제 여객 운송
 - 광고·선전의 목적으로 무료로 제공하는 단가 €16.60(부가세 제외)인 재화 및 특정 상황에서 제공하는 무료 샘플

□ 면세

- 부가가치세법 §28~§41에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와 용역
 - 정부가 50% 이상 보유한 우편사업자가 제공하는 우편용역
 - 보건 용역
 - 사회보장 용역

- 교육 용역
- 단체가 소속 회원에게 제공하는 용역
- 스포츠와 체육교육 관련 용역
- 문화 관련 용역
- 자금 모금
- 방송 용역
- 보험
- 토지, 건물, 아파트 공급 및 임대
- 금융서비스
- 인지, 우편엽서
- 복권

다. 납부세액의 계산 및 신고·납부

과세표준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
- 자가 소비나 고용인에게 무상으로 제공한 경우 과세표준은 취득가액이나 제조 원가
- 과세표준에는 관세, 포장비, 운반비, 보험료 등이 포함
- 공급 시 제공되는 할인은 과세표준에서 차감

세율

- 일반 세율 20%
- 의약품, 도서 등에 대해서는 10%의 감면 세율 적용
- 20%의 일반세율은 슬로바키아의 재정적자가 GDP의 3% 미만일 때까지 적용 예정

신고

- 납세의무자는 과세기간 종료 다음달 25일까지 신고·납부

환급

- 부가가치세 등록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초과 납부한 경우, 다음 과세기간 납부세액에서 공제하고, 공제 후에 남은 금액은 다음 과세기간 신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환급

가산세

- 납부불성실가산세율은 유럽중앙은행 고시 이자율의 4배로 일할 계산하며, 최저 가산세율은 15%
- 과소신고가산세율은 유럽중앙은행 고시 이자율의 3배이며, 최저 가산세율은 10%
 - 과소신고에 대해 자신 수정신고한 경우 가산세 50% 감면
- 지연신고에 대해서는 €30~€16,000의 가산세를 신고지연기간에 따라 차등 부과
 - 세무서의 신고 지정일까지 신고하지 않는 경우 최고 €32,000의 가산세 부과
- 명령사항 위반에 대해서 위반 건당 €3,000의 가산세 부과, 위반 시마다 반복 부과

불복

- 과세당국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납세자는 결정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세무서에 불복제기
- 세무서는 불복 내용을 인용하거나 과세위원회에 회부

조세범 처벌 강화

- 2012년 부가가치세 법률에 맞추어, 형법 상 조세범칙행위 분류 방식이 크게 개정
- 부가세 등의 부정 환급을 조세포탈죄로 정의

- 부당한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를 환급 받는 것을 조세포탈죄로 별도로 정의
- 형법 개정 전 부가세 및 특소세 포탈행위를 세금이나 사회보장기여금의 미납부와 같은 일반 범죄로 분류하던 것을 형법 개정으로 조세포탈죄로 별도 분류
- 조세포탈죄로 엄격히 분류함에 따라 부가세 등의 부정환급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배상책임(active redress)’을 지는 것은 의미가 없어, 부당 환급세액을 추후 납부하더라도 처벌받게 됨
- 세무행정 수행을 방해하는 다음의 행위를 새로운 범죄로 규정
 - 과세당국에 허위, 왜곡된 데이터를 제출하거나 정확한 세금산출에 필수적인 데이터를 은폐
 - 정확한 세금산출에 필수적인 문서를 바꾸거나 조작하거나 파괴
 - 법에 규정된 보고의 의무 미준수
 - 법에 규정된 세무감사와 관련된 의무 미준수
- 과거 12개월 내 유사한 조세범칙행위로 처벌을 받은 자가 재범을 저지른 경우 ‘적극적인 배상책임(active redress)’을 짐으로써 처벌을 면할 수 있는 조건을 엄격하게 변경
- 슬로바키아 법 상 의무 위반에 관하여 법인은 책임의 주체가 아니며, 범법행위의 책임은 경영자가 짐

5

특별소비세(Excise Tax)

과세대상

- 다음의 재화에 대해서는 슬로바키아 내 생산, EU 국가 내 공급, 수입 여부에 관계없이 특별소비세 부과
 - 석유류, 천연가스, 석탄
 - 맥주, 와인, 주정, 담배 제품
 - 전기

6

지방세

부동산세

- 부동산세는 건물, 아파트, 토지의 소유자나, 토지대장에 등록된 임차인이 내는 세금으로, 부동산의 크기, 위치, 부동산의 종류에 따라 세금 결정
- 부동산세는 토지세, 건물세, 아파트세로 구분

토지세(Tax on Land)

- 과세표준
 - 지방세법에서 정한 1m² 당 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하여 계산하나, 시정부가 공시지가를 올릴 수 있음
- 세율
 - 기본세율 0.25%
 - 시정부(Municipal Authority)가 증가·감소 시킬 수 있으며, 부동산의 종류에 따라 세율을 차등 적용 가능
 - 가장 높은 세율이 가장 낮은 세율의 20배를 초과할 수 없음

- 원자력시설이 있는 토지에 대한 세율은 기본세율의 100배를 초과할 수 없음

○ 과세대상 자산

- 경작지, 홉재배지, 포도밭, 과수원, 영구초지, 정원, 상업 목적의 임목 재배지, 상업 목적의 연못, 건물이 지어진 땅 및 마당, 건설 중인 토지, 그 외 토지

건물세(Tax on Constructions)

○ 과세표준

- 당해 건축물 중 가장 넓은 바닥면적

○ 세율

- 기본세율 1㎡당 €0.03

- 시정부가 증가·감소시킬 수 있고, 건물의 종류에 따라 다른 세율을 적용할 수 있음

- 최고 세율이 최저 세율의 40배를 초과할 수 없으며, 시정부는 층수에 따른 부가세(층당 €0.33)를 부과할 수 있음

○ 과세대상 자산

- 거주용 건물과 거주용 건물에 부속된 다른 용도의 건물, 농업제품 생산 건물, 온실, 농업제품 보관시설, 물관리 시설, 레저용 건물, 별장, 독립된 정비소 및 아파트에 부속된 정비소용 건물, 산업용 건물, 사업용 건물, 기타 건물

아파트세(Tax on Apartments)

○ 과세표준

- 아파트 바닥 면적

○ 세율

- 기본세율 1㎡당 €0.0331, 시정부가 증가·감소가능

자동차세(Motor Vehicle Tax)

○ 자동차세는 특정 자동차와 사업용 트레일러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자치구역

(Self-Governing Regions)에서 부과되는 지방세로 세율 등이 지역별로 차이가 없음

- 개인용 차량
 - 엔진 크기에 따라 과세
 - 엔진 크기 900cm³ - 3,000cm³, 세금 €60.98 - €209.12
- 사업용 차량
 - 차축의 개수와 차의 톤수에 따라 과세
 - 차축 1-2개 : 1톤 미만 - 30톤 초과, 세금 €59.75 - €2,401.58
 - 차축 3개 : 15톤 미만 - 40톤 초과, 세금 €491.93 - €2,702.65
 - 차축 4개 : 23톤 미만 - 40톤 초과, 세금 €647.28 - €2,304

7 | 사회보장기여금(Social Security Contributions)

□ 사회보장기여금 개요

- 고용주, 고용인, 자영업자는 개인·법인소득세를 납부하는 외에도 의료보험과 사회보장제도 기여금을 납부하여야하며, 그 외에도 자발적으로 가입하여 사회보장기여금을 납부할 수 있음
- 2004.5.1 EU 가입에 따라 EU의 사회보장규칙(EU Social Security Regulation)이 슬로바키아에 적용됨에 따라, 다른 EU 국가에서 슬로바키아로 파견된 근로자는 슬로바키아의 사회보장제도에 편입되나, 근로자 본인이 자국의 사회보장제도에 남는 것을 선택할 수 있음
- EU, EEA(European Economic Area), 스위스 외의 다른 나라에서 슬로바키아로 파견된 근로자는 슬로바키아 사회보장제도의 적용을 받음
- 기여금은 과세표준에 기여금율을 곱하여 산출

고용주 및 고용인의 기여금 과세표준

- 고용주 및 고용인의 과세표준은 총급여
- 총급여는 임금 및 급여 총액을 뜻하며 거주자의 경우 국외원천소득을 포함
- 소득세 과세되는 복지후생수당은 과세표준에 포함
- 과세표준 상한금액은 €3,930(2013.1.1 기준)

자영업자의 과세표준

- 자영업자의 과세표준은 연간 총수입금액
- 2013.7.1부터 연간수입금액이 €4,716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기여금 납부하여야 하며, 미달하는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납부하거나 납부하지 않을 수 있음
- 과세표준 하한금액은 €393, 상한금액은 €3,930(2013.1.1 기준)

기여금율

(단위 : %)

보장제도	고용주	고용인	자영업자	자발적기여자
의료보험	10	4	14	14
연금	14	4	18	18
장애	3	3	6	6
질병	1.4	1.4	4.4	4.4
실업	0.8	1	-	2
합계	29.2	13.4	42.4	44.4

- Act No.595/2003 on Income Tax : 법인소득세, 개인소득세
- Act No.222/2004 on VAT Tax : 부가가치세
- Act No.582/2004 on Local Taxes : 지방세
- Act No.98/2004 on the Excise Duty on Mineral Oil :
석유류에 대한 특별소비세
- Act No.104/2004 on the Excise Duty on Wine :
와인에 대한 특별소비세
- Act No.105/2004 on the Excise Duty on Sprit :
주정에 대한 특별소비세
- Act No.106/2004 on the Excise Duty on Tobacco Products : 담배에 대한 특별
소비세
- Act No.107/2004 on the Excise Duty on Beer :
맥주에 대한 특별소비세



제 3 장 이전가격(Transfer Pricing)³⁾

1. 이전가격 법제화 연혁
2. 이전가격에 적용되는 법규
3. 국외 특수관계자
4. 이전가격 산출방법
5. 이전가격 산정 관련 구비서류(Documentation Requirement)
6. 이전가격 구비서류 제출
7. 가산세
8. 세무조사
9. 소득조정
10. APA(Advance Price Arrangement)
11. 상호합의

3) SARIO "TAXES AND SOCIAL SECURITY", IBFD "CORPORATE TAXATION", KPMG "SLOVAK REPUBLIC-TRANSFER PRICING" 참고

1 | 이전가격 법제화 연혁

- 1993년 최초로 법제화(소득세법 Income Tax Act)되어, 시장가격을 정상가격으로 규정
- 1997년 특수관계자의 범위를 구체화
- 1999년 특수관계자와의 거래가격이 정상가격 보다 높거나 낮은 경우 이전가격 적용 규정
- 2000년 특수관계자와의 거래가격이 정상가격과 달라 납세자의 과세표준을 감소시키는 경우 이전가격 적용 규정
- 2001년 이전가격 산출방법 규정
- 2009년 이전가격 관련 증빙 서류 규정

2 | 이전가격에 적용되는 법규

- 소득세법(Income Tax Act 595/2003)
- 행정절차법(Tax Procedure Code, Act 563/2009)
- OECD 이전가격 가이드라인(OECD Transfer Pricing Guidelines)
 - * OECD 이전가격 가이드라인은 과세당국 및 납세자가 이용하고 있으나 구속력은 없음

3 | 국외 특수관계자

특수관계자 정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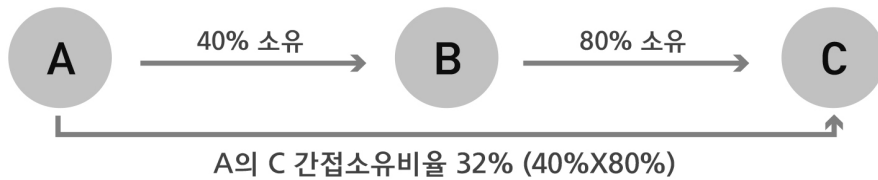
- 특수관계자는 인적, 경제적 및 다른 형태로 서로 연관되어 있는 가까운 관계를 뜻함
- 인적 특수관계는 부모, 배우자, 자녀 및 가까운 친척을 포함
- 경제적 특수관계는 일방이 타방을 소유하거나 지배·경영에 참여하거나 기타 특수관계를 의미

□ **국외 특수관계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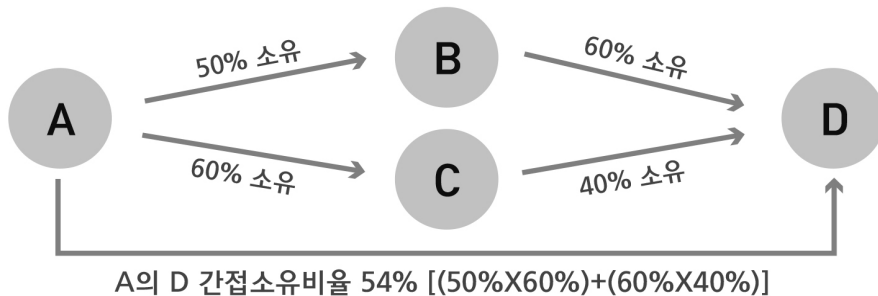
- 거주자인 개인 또는 법인이 비거주자인 개인 또는 법인과 특수관계자임을 의미

□ **소유 또는 지배·경영에 참여**

- 소유 또는 지배·경영은 직·간접적으로 의결권 있는 주식 또는 지분을 25% 초과 보유 의미
- 간접소유비율은 단계별 소유비율을 곱하여 계산



- 한 법인이 여러 다른 법인의 지분을 보유하고 그 여러 다른 법인이 또 다른 한 법인의 지분을 보유한 경우, 한 법인과 여러 다른 법인의 간접소유 비율의 합이 50%를 초과할 경우 관련된 모든 법인이 특수관계



- 경영에 참여한다는 것은 관계자 쌍방의 이사·감사의 관계로 판단

기타 특수관계

- 기타 특수관계는 사업상 관계가 과세표준을 줄이거나 손실을 늘이는 것을 유일한 목적으로 성립된 관계를 의미

4 | 이전가격 산출방법

개요

- 이전가격 산출방법은 소득세법에 규정되어 있음
- 소득세법에는 산출방법의 종류 및 산출방법에 대한 간단한 정의만 규정되어 있어 실제 적용에 있어서는 OECD TP Guideline을 참고

거래접근법(Transaction-Based Method)

- 비교가능제3자가격법(CUP, Comparable Uncontrolled Price Method)
- 재판매가격법(RP, Resale Price Method)
- 원가가산법(CP, Cost Plus Method)

이익접근법(Profit-Based Method)

- 이익분할법(Profit Split Method)
- 거래순이익률법(Transactional Net Margin Method)

이전가격 산출방법 적용 순서

- 이익접근법은 거래접근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적용
- 이익접근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산출방법을 혼용하여 적용할 수 있음
- 이익접근법 및 거래접근법 외의 다른 합리적 산출방법 적용 가능

□ 산출방법 선정

- 소득세법에서 산출방법 선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일반적으로 OECD TP Guideline에 따름

5

이전가격 산정 관련 구비서류(Documentation Requirement)

□ 법적근거

- 2009년 개정 소득세법에서 이전가격 산정 관련 구비서류에 대해 규정
- 소득세법에 따라 재정부가 ‘TP 관련 구비서류에 관한 고시(TP Documentation Requirement Regulation)’ 재정하여 2009년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 ‘TP 관련 구비서류에 관한 고시’는 OECD TP Guideline 및 EU 이전가격 구비서류에 관한 법률(EU Code of Conduct on Transfer Pricing Documentation)의 내용을 기초로 재정

□ 구비서류 범위

- 전체서류(Full-Scope Documentation) 구비 의무
 - IFRS에 따라 감사보고서를 준비해야 할 의무가 있는 납세자는 ‘전체 서류’를 구비해야 함
 - 전체서류는 마스터파일(Masterfile Documentation)과 국가세부명세(Country-Specific Documentation)으로 구성
- 간편서류(Simplified Documentation) 구비 가능
 - IFRS에 따라 감사보고서를 준비해야 할 의무가 없는 납세자는 ‘간편 서류’를 구비할 수 있음
 - 특수관계자가 거래목록을 중심으로 서류 구비
 - 특수관계자간 거래목록에는 거래형태에 관한 정보, 거래의 중요한 성격, 거래

규모, 잔여 거래 규모, 당해 과세기간 중 실현될 모회사나 자회사와의 거래계약 목록 등이 포함

■ 마스터파일 포함 내용 ■

- 그룹 소속사들의 세부명세, 전세계 관계사 구성(전년 대비 변화 내용 포함)
- 그룹 전체의 사업활동, 영업전략, 해당 산업에서 그룹의 위상(전년 대비 변화 내용 포함)
- 그룹의 향후 계획 및 목표(전년 대비 변화 내용 포함)
- 개별 계열사의 역할, 위험부담(전년 대비 변화 내용 포함)
- 정상가격 산정을 위해 필요한 기타 서류

■ 국가세부명세 포함 내용 ■

- 당해 납세자의 세부명세, 지분 보유 내역(전년 대비 변화 내용 포함)
- 당해 납세자의 사업활동, 영업전략, 해당 산업에서 당해 납세자의 위상(전년 대비 변화 내용 포함)
- 당해 납세자의 향후 계획 및 목표(전년 대비 변화 내용 포함)
- 특수관계 거래 및 세부 명세
- 당해 납세자의 무형자산 보유 및 이용 내역 및 사용 범위
- 당해 납세자가 승인받은 APA(Advance Pricing Arrangement) 목록
- 당해 납세자가 맺은 비용부담약정(Cost Contribution Agreements) 목록
- 당해 납세자가 수행하는 역할, 위험부담(전년 대비 변화 내용 포함)
- 독립거래의 내·외부 비교대상(Comparables)에 대한 정보
- 특수관계거래의 가격산정, TP 산출방법 선택, 당해 납세자의 TP 시스템에 관한 정보
- 정상가격 산정에 필요한 기타 서류

6

이전가격 구비서류 제출

- 납세자는 항상 이전가격 구비서류를 갖추고 있어야하며, 이전가격 산정에 영향의 미칠 수 있는 요인에 변화가 없다면 이후 연도에도 동일한 구비서류를 이용할 수 있음
- 과세당국은 세무조사 시 이전가격 구비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제출 요구를 받은 납세자는 요구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함
- 이전가격 구비서류는 10년간 보관

7

가산세

- 이전가격과 관련한 별도의 가산세 조항은 없으며, 법인소득세법상 동일한 가산세 적용
- 이전가격에 의해 과소신고된 소득에 대해서 과소신고가산세 과세
 - * 과소신고가산세율 유럽중앙은행 이자율의 3배, 최저가산세율 10%
- 이전가격 구비서류를 구비하지 않은 경우 명령사항 위반에 따른 가산세 과세
 - * €60 ~ €3,000 사이의 가산세 부과

8

세무조사

- 일반적으로 이전가격만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지 않으며 법인소득세조사 과정에서 이전가격을 함께 조사
- 이전가격 전문부서로 ‘특정 납세자를 위한 세무국(Tax Authority for Selected Taxpayers)’이 슬로바키아의 수도 브라티슬라바에 위치하고 있으며, 그 외 몇

개 지역에 국제조세 전문부서가 있으나, 대부분 일반 세무조사 과정에서 이전 가격 조사를 병행하고 있음

9 | 소득조정

- 이전가격 조사에 따라 적출된 소득은 납세자의 해당 과세기간 소득에 합산
- 조세조약 체결 상대국이 합리적인 이전가격 산출방법에 따라 해당국 납세자의 소득을 조정할 경우 거래 상대방인 슬로바키아 납세자에 대한 대응조정 인정

10 | APA(Advance Price Arrangement)

- 납세자는 필요한 경우 이전가격 산출방법에 대한 사전승인(APA)를 신청할 수 있음
- 과세당국은 30일 이내에 결정서 발부하여야 하나, 기한을 연장할 수 있음
- 납세자는 컨설팅비용 등이 포함된 APA비용을 부담

11 | 상호합의

- 슬로바키아가 체결한 조세조약은 ‘상호합의’를 포함하고 있음
- 조세조약 체결국의 거주자인 납세자는 당해 체결국 과세당국의 행위로 인해 소득이 늘어난 것이 조세조약에 따라 합당하지 않은 경우(이전가격 과세포함) 상호합의를 신청할 수 있음
- 상호합의는 결정통지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제기되어야 함



제 4 장 외국인 투자 환경⁴⁾

1. 시장 특성
2. 슬로바키아 투자 이점
3. 외국기업 투자동향
4. 무역관련 제도
5. 슬로바키아 진출기업의 애로사항

⁴⁾ 자료: KOTRA, SARIO(슬로바키아 투자무역개발청)

【슬로바키아로의 투자 타당성 10가지】



- ▶ 유럽내 전략적 위치
- ▶ 정치, 경제적 안정성
- ▶ 중·동유럽 내 사업을 위한 최상조건
- ▶ 노동 생산성 지역 내 선두
- ▶ 고등교육을 받은 인력인프라
- ▶ 유로화를 공식 화폐로 사용
- ▶ 기반시설 네트워크의 지속적 성장
- ▶ R&D프로젝트의 높은 잠재력
- ▶ 부동산의 다양성
- ▶ 상이한 경영방식의 뛰어난 적응력

* 자료: SARIO(슬로바키아 투자무역개발청)

1 | 시장 특성

□ 시장규모

- 연간 수입규모는 2012년 기준 592.2억 달러로 중동부 유럽4개국(폴란드, 체코, 헝가리, 슬로바키아) 중 가장 작은 수입시장을 보유하나 앞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

□ 시장특성

- 체코슬로바키아 공산당 정부의 지역별 산업배치 정책에 따른 군수산업과 화학 산업 위주의 중공업에 편중된 산업구조로 자유화 이후 이들 산업의 노후화와 경쟁력 열위

- 2000년대 노동법 개정 및 조세제도 개혁, 2004년의 EU 가입, 및 2009년 유로화 도입으로, 유럽 내 유망한 생산기지로 부상하여 자동차와 전자업종을 중심으로 외국인 투자가 급증
- 슬로바키아의 제조업, 특히 외국인 투자기업들은 슬로바키아 내 판매보다는 서유럽을 겨냥한 수출 위주의 생산을 하며 제품 생산을 위한 부품 및 소재를 수입에 크게 의존

□ 소비특성

- 독립 이후 체코나 헝가리에 비해 낮은 수준의 소득으로 중·저가 품목의 구매를 선호하며 다소 엄격한 계획 구매 행태를 보임. 유명 상표에 대한 맹종 현상이 낮은 편으로 상품 구입 시 가격 대비 품질을 중요시하는 경향을 보이나 최근 유행상품의 경우 젊은 층을 중심으로 점차 유명상표 제품을 선호하는 경향이 생김
- 구매시즌은 소비재의 경우 크리스마스, 부활절 기간 중 구매가 왕성하며, 7~8월의 휴가철은 구매활동이 침체되므로 이를 대비하여 수입업체들은 1~2월 및 9~10월에 수입을 확대
- 월평균 명목임금이 2012년 평균 805유로 정도로 생활수준은 낮은 편이었으나 가구 당 2인 소득, 저렴한 기초 의식주 비용 등을 감안하면 실질적인 가처분 소득은 낮은 편이 아니며, 특히 운동용품, 레저 용품, 문화 용품 등은 고가품이 선호되는 경향
- 정부의 사유재산 반환으로 부동산을 돌려 받은 계층이나 신흥 비즈니스맨 등은 고급 소비계층을 형성하고 있으며 전 인구의 3% 내외는 가격에 관계없이 소비할 수 있는 고소득층으로 분류
- 상권의 경우 개방 이후 유통업 등 서비스 분야가 자유화됨에 따라 인근 서유럽의 대형 유통 업체들이 유통업에 대거 진출하여 상권을 장악

□ 유통구조

- 일반적유통단계는 수입업자/도매업자, 도매업자(분배업체) 및 소매상의 2~3 단계로 되어 있으며, 대형 유통업체는 이중 1단계가 생략
수입/도매업체는 소매업체의 소량 주문 수용을 위해 보세창고를 갖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 유통마진은 품목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마진율은 높지 않은 편임⁵⁾
- 백화점은 발달해 있지 않으며 대형 하이퍼 마켓(TESCO, MAKRO 등) 및 슈퍼마켓 형태로 슬로바키아 유통업계에 대거 진출하여 유통분야 장악

□ 노동 관련 여건

- 슬로바키아는 시장경제 원리와 부합하는 노동관계를 실현하고자 자국의 노동법을 개정(2011.9.1일부터 발효)
- 개정된 노동법에 의하면, 기존처럼 특별 직업군을 제외하고 주 40시간근무제를 도입하고 있으나, 법정 초과근무시간(근로자 관리자와 합의 시)은 연간 최대 250시간에서 근로자의 경우 400시간, 관리자의 경우 550시간으로 대폭 확대
- 근로자 해고를 위해 기존에는 2개월 전(5년 이상 근무자는 3개월 전) 서면통보하고, 구조조정에 의한 해고인 경우 추가로 2개월분 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했으나, 개정된 노동법은 사전서면 통고 기간을 근로자의 근무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1년 미만은 1개월, 1년 이상 5년 미만은 2개월, 5년 이상 10년 미만은 3개월 등)이 되도록 하고 있으며, 특히, 정리해고 시 근로자는 해고통지 기간내 유급 근로 또는 해고통지 기간 근로 없이 퇴직급여를 즉시 받는 것중 택일해야 한다고 규정
- 슬로바키아 노조는 주변국에 비해 온건한 편
- 월 평균급여는 서유럽에 비해 여전히 낮은 수준으로, 2012년 평균임금은 약 805유로이나 수도 브라티슬라바(Bratislava)지역이 991유로로 가장 높고, 프레

5) 마진율 체계는 대개 1:2:3으로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 수입업자 마진율이 10%일 경우 도매업자 20%, 소매상 30%의 마진

쇼프(Prešov)지역이 594유로로 가장 낮아 지역별 차이가 크므로, 현지 진출 시 지역별 현황 파악 필요

□ 한국상품 인지도

- 삼성전자가 2002년에 진출한 이후 2008년도 슬로바키아 기업 중 매출순위 3위를 기록하고, 슬로바키아 제조업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 중 최대규모인 기아자동차 투자가 이루어진 데 이어, 2007년에는 삼성전자가 LCD 모듈공장을 추가 건설하여 한국기업들의 슬로바키아 진출이 급증함에 따라 한국업체 및 제품 특히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소비자 인지도가 빠른 속도로 높아짐
- 전자제품의 경우 아직 삼성전자와 LG전자가 한국업체라는 사실을 아는 소비자가 대도시 지역주민에 그치며 일반 소비재의 경우 한국상품에 대한 소비자 인지도는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무
- 기아자동차의 경우에는 현대자동차와 함께 한국제품임을 홍보하며 특히나 Made in Slovakia(현대의 경우 made in Czech)를 강조하는 마케팅과 높은 보증기간으로 점차 판매를 높여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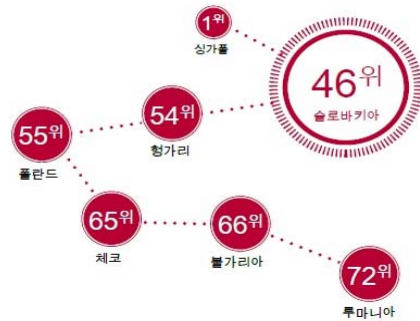
□ 유망상품

- 상대적으로 적은 내수시장 규모를 가지고 있어 내수시장을 목적으로 한 제품보다는 수출을 목적으로 생산활동을 하는 슬로바키아 내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한 원부자재 및 부품수출이 유망
- 특히 슬로바키아 산업에서 가장 커다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 및 전자산업은 부품 및 소재의 수입에 크게 의존하여 이들 자동차부품 및 전자부품의 진출이 유망

2 슬로바키아 투자 이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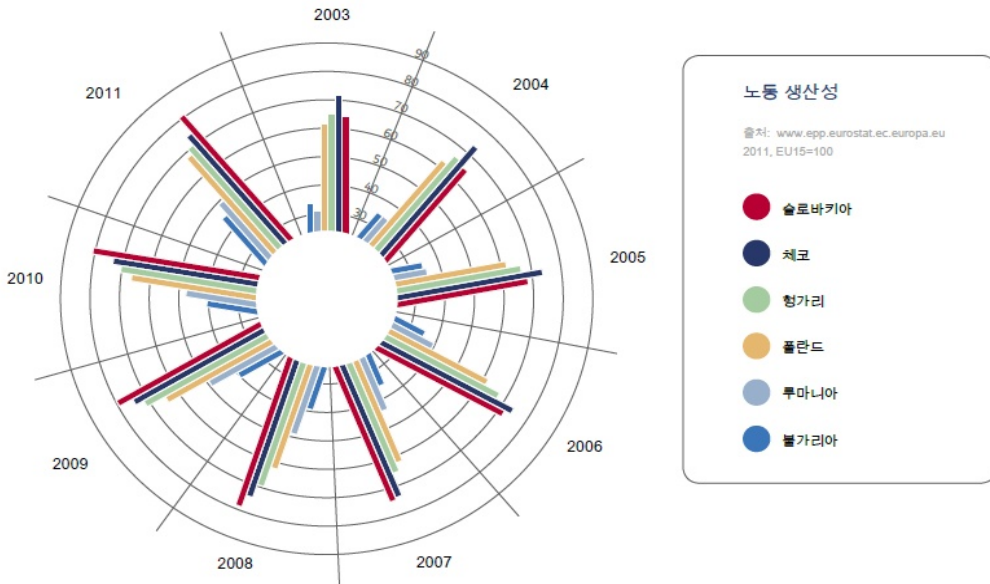
□ 중·동유럽(CEE)내 최상의 사업조건

- 2013년 세계은행 사업수행보고서에
서 국가등급
46위를 받음. 주변국에 비해 투자
규제 환경이 사업운영에 있어 적합함



□ 노동생산성 지역내 선두

- 근로시간 당 GDP를 의미하는 노동
생산성은 국가별 경제 생산성을 보여줌. 유럽연합(EU-15) 평균수치와 비교할
때 주변국 등과 비교해 높음



□ R&D 프로젝트의 높은 잠재력

-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프로젝트와 투자유치 장려에 우선점을 두며 R&D와 혁신산업에 주력함
- 슬로바키아가 R&D분야에서 유리한 핵심요인
 - 합리적인 인건비와 수준높은 인력
 - 첨단기술 산업단지내의 다수의 제조공장
 - R&D센터와 기술클러스터 보유
 - 광범위한 R&D 및 혁신네트워크
 - 슬로바키아 내 기업과 대학교육 기관의 유기적인 산학협동
 - R&D 장려금 지원
- 슬로바키아의 R&D 순위



□ 투자우대 제도

- 투자장려금 지원법률의 주요 특징(2008년 발효)
 - 고부가가치 산업과 실업률이 높은 지역산업에 대한 투자를 유인하기 위하여, 고부가가치산업 투자 및 고실업률지역 투자시 투자금액이 다소 낮아도 투자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투자장려금 신청자격이 되는 최소 투자금액을 각 분야(산업생산, 기술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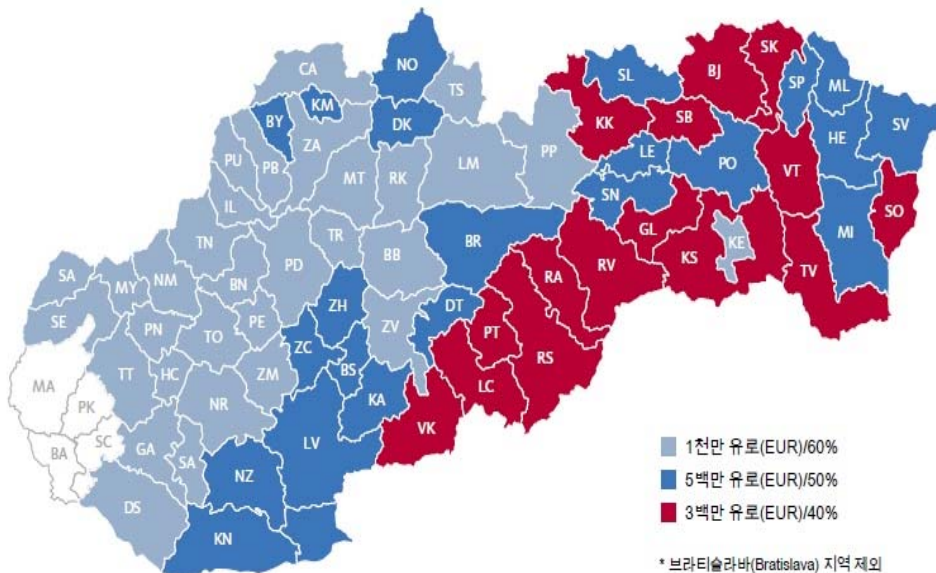
전략서비스센터, 관광 등)마다 상이하게 설정

- 주재국 정부기관의 투자장려금 지원 결정이 불합리하게 장기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행정처리에 소요되는 최대기한 설정 및 불필요한 행정부담 폐지
- 투자장려금 지원대상 분야 확대(관광분야 포함)
- 신규 생산설비 및 기술제품의 구입만 투자에 해당됨
- 산업설비 및 기술설비가 총 산정대상비용(total eligible costs)의 60% 이상이어야 함

○ 투자지원분야

수혜가능 프로젝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 · 기술센터 · 공유 서비스 센터 · 관광산업
장려금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지 매입 비용 · 건물 구입 및 건축 비용 · 기술 장비 및 기계 구입비용 · 유동 장기자산, 인가, 특허 등

○ 2013년 최소 투자금 현황



□ 외국인 직접투자동향

- 1993년 독립된 후 1998년까지 민영화된 950개 국유기업 중 외국인에게 매각된 기업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외국인 투자에 비우호적이었음
- 1998년 10월 자유주의적 성향의 주린다(Dzurinda) 총리 정부가 집권한 이후 1999년에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한 ‘3개 기둥 전략(Three-pillar strategy)’⁶⁾을 수립하면서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노력을 본격화함
- 2001년 1월 ‘외국인투자 인센티브법(Investment Incentives Act)’을 발효, ‘전략적 투자자에 대한 세금 감면법(Strategic Investors Tax Law)’을 제정함
- 40%에 달했던 법인세율을 2000년 29%로 인하, 2002년 25%로 인하, 2004년부터는 19%로 인하하며 노동법을 대폭 개정하여 노동의 유연성을 크게 높이는 등 기업 경영환경을 크게 개선함
- 정부의 외국인투자 유치노력과 2004년 5월 EU 가입으로 슬로바키아는 저렴한 투자비용과 유럽의 중앙에 위치한 지정학적 이점을 바탕으로 유럽 내 유망 생산기지로 부상함
- 금융위기의 여파로 2009년도 외국자본의 투자진출이 급격히 감소, 1/4분기중 총 투자유입 금액은 전년 동기 대비 2/3이나 감소하였으며 2010년에는 투자가 더욱 감소함

6) 투자인 인센티브 제도의 도입,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One-Stop 서비스 제공, 산업단지의 조성

■ 슬로바키아 내 외국인 직접투자 유입 ■

(단위: EU 개)

국명	2008년	2009년	2010년(~9월)
네덜란드	607.6	-14	113
오스트리아	491.5	82	42
독일	705	67	65
체코	475	-217	-129.6
프랑스	108	48	10
헝가리	57	3.5	-
이탈리아	161	21	3.7
한국	28.5	-70	-
룩셈부르크	355	14	1
브라질	-2.7	516	-
사이프러스	303	222.5	106

* 자료: 슬로바키아 중앙은행(2011.03)

- 국가별로는 네덜란드의 투자가 2008년 말 기준으로 총 누계액 100억 유로로 가장 많으며 우리나라의 투자도 2002년 삼성전자의 진출과 함께 본격화되기 시작한 후 기아 자동차의 진출 및 협력업체들의 투자가 이어지면서 2005년 외국인 직접 투자국 중 1위, 2006년 2위를 차지하는 등 최근 2~3년 사이 크게 증가함
- 2009년 새로운 투자국으로 브라질과 사이프러스가 등장하고 기존 유럽 국가의 투자액은 현저하게 줄어듦. 특히 체코는 2008년까지 외국인 직접 투자국 4위였으나 2009년, 2010년에는 마이너스 투자로 전환됨
- 산업별로는 2003년 이후 외국인 직접투자가 제조업 분야와 에너지 공급분야에 집중, 그 중에서도 자동차 및 전자 산업 투자가 최대임
- 지역별로는 수도인 브라티슬라바 지역과 트르나바 지역에 대한 투자가 2010년 3/4분기 기준 전체 외국인 직접 투자의 65%를 점유함

□ **한-슬로바키아 투자현황**

- 유럽내 최대 생산투자 진출국, 삼성전자, 기아차 등 대기업과 관련 협력사 90여 개 업체 진출함

■ **한국의 對슬로바키아 투자** ■

(단위: 건, USD 천)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누계
건수	48	23	34	25	16	146
금액	131,484	58,170	27,913	33,890	203,340	454,796

*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

■ **슬로바키아의 對한국 투자** ■

(단위: 건, USD 천)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누계
건수	-	-	-	-	-	-
금액	-	-	-	-	-	-

* 자료: 지식경제부 외국인투자통계

■ **슬로바키아내 우리기업 업종별 투자현황(11.3월말 누계)** ■

(단위: 건, 개, USD 천)

업종대분류	신고건수	신규법인수	신고금액	송금액수	투자금액
총합	275	86	1,010,864	393	938,004
제조업	224	64	988,733	326	920,889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업	8	2	2,101	9	2,110
도매 및 소매업	25	14	10,005	34	6,547
운수업	5	2	1,032	4	203
부동산업 및 임대업	7	1	3,356	8	3,356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1	1	132	3	115
사업시설관리 및 서비스업	5	2	5,505	9	4,784

* 자료: 한국수출입은행(2011.10)

■ 주 투자자 규모별 해외투자 현황(11.3월말 누계) ■

(단위: 건, 개, USD 천)

주투자규모	신고건수	신규법인수	신고금액	송금횟수	투자금액
총합	283	88	1,011,623	395	938,507
대기업	92	24	844,689	126	809,871
중소기업	165	53	150,689	220	117,453
개인기업	6	3	4,206	15	1,249
개인	20	8	12,642	34	9,934

* 자료: 한국수출입은행(2011.10)

□ 주요 외국 투자기업

■ 슬로바키아 내 주요 외국 투자기업 ■

부 문	업체명	투자국
Automotive	Volkswagen Slovakia, a.s.	독일
	Kia Motors Slovakia, s.r.o.	한국
	PSA Peugeot Citroen Slovakia, s.r.o.	프랑스
	Mobis Slovakia, s.r.o.	한국
	SAS Automotive, s.r.o.	독일
	INA Kysuce, a.s.	독일
	HBPO Slovakia, s.r.o.	독일
IT	IBM	미국
	DELL Business Centre	미국
	Hewlett-Packard Slovakia	미국
	Siemens	독일
	NESS Slovakia	이스라엘
	T- Systems Slovakia	독일
Energy	ABB	네덜란드
	Elnord Slovakia	폴란드
	Slovenska Elektrarna	이탈리아
	Probugas	네덜란드
	Vychodoslovenska Energetika	독일
Telecom Service	T-Mobile	독일
	Orange Slovensko	프랑스
	GTS Nextra	네덜란드
Electronics	Samsung Electronics Slovakia, s.r.o.	한국
	Sony Slovakia, s.r.o.	일본
	Samsung Electronics LCD Slovakia	한국
	Simens	독일
	Emerson	미국
	Osram	독일
	Panasonic	일본
Metallurgy, Metal Processing	Bekaert Hlohovec	벨기에
	Slovalco	노르웨이
	US Steel Kosice	미국

* 자료: SARIO 슬로바키아 투자무역개발청 자료 종합

■ 슬로바키아 내 한국기업 ■

	업체명	업종	취급분야	홈페이지
1	그린로지스틱스 슬로바키아	운송,물류	운송,창고	www.green-logistics.sk
2	글로비스 슬로바키아	제조	타이어,휠	www.glovis.net
3	기아자동차 슬로바키아	제조	자동차	www.kia.sk
4	누리텍	제조	정밀기기	www.nuritech.sk
5	대영전자 슬로바키아	제조	정밀기기	
6	동양 E&P 슬로바키아	기타		www.dyenp.com
7	동우 화인캠	기타		
8	동원금속 슬로바키아	제조	자동차부품	www.dwmic.com
9	동일고무벨트 슬로바키아	제조	자동차부품	www.drworld.com
10	동진정밀 슬로바키아	제조	전기,전자	
11	동희 슬로바키아	제조	자동차부품	www.donghee.co.kr
12	모비스 슬로바키아	제조	자동차부품	www.mobis.co.kr
13	방주전자 슬로바키아	제조	기타제조	www.bjoptp.com
14	삼강다이캐스팅 슬로바키아	제조	기타제조	
15	삼성전자 LCD 슬로바키아	제조	전기,전자	www.samsung.sk
16	삼성전자 슬로바키아	제조	전기,전자	www.samsung.sk
17	삼일 발레니에	제조	기타제조	www.samileps.com
18	삼진 엘앤디 슬로바키아	제조	기타제조	www.samjin.co.kr
19	성우하이텍 슬로바키아	제조	자동차부품	www.swhitech.com
20	성지 슬로바키아	제조	전기,전자	www.seongji.co.kr
21	세종 슬로바키아	제조	자동차부품	www.sjku.co.kr
22	세화 슬로바키아	제조	자동차부품	www.sehwa.co.kr
23	신화인터넷 슬로바키아	제조	전기,전자	www.shinwha.com
24	신흥정밀 슬로바키아	제조	전기,전자	www.sch.co.kr
25	아빈메리토 피에치에이 도어	제조	자동차부품	www.phau.co.kr
26	에스엘헬라 슬로바키아	제조	자동차부품	www.sk.co.kr
27	유라 코퍼레이션	제조	자동차부품	www.yura.co.kr
28	일진 슬로바키아	제조	자동차부품	www.iljin.co.kr
29	제이엠아이 슬로바키아	제조	기타제조	www.jmikorea.co.kr
30	제이엠티 슬로바키아	제조	기타제조	www.jmtsk.sk
31	코암	제조	전기,전자	www.koam.sk
32	코암전자	제조	기타제조	www.koam.sk

* 자료: KOTRA(13.3.30)

■ 슬로바키아 내 한국기업 ■

	업체명	업종	취급분야	홈페이지
33	파인디앤씨 슬로바키아	제조	기타제조	www.finednc.ocm
34	팍트라 슬로바키아	운송물류	운송물류	www.pac-tra.com
35	하이스코 슬로바키아	제조	자동차부품	www.hysco.com
36	한라공조 슬로바키아	제조	자동차부품	www.hcc.co.kr
37	한성전자 슬로바키아	제조	기타제조	
38	한솔 LCD 유럽법인	제조	전기,전자	www.hansollcd.sk
39	한일이화 슬로바키아	제조	자동차부품	www.hanileh.com
40	현담 슬로바키아	제조	자동차부품	www.hyundam.com
41	HB 로지스	제조	기계,금속	www.hbjoint.com
42	LS 엠트론	제조		www.lscable.co.kr
43	SK 메탈	서비스	자동차부품	
44	TI 한일 슬로바키아	제조	자동차부품	www.haniltube.co.kr
45	후성 슬로바키아	제조	자동차부품	www.fpi.co.kr

* 자료: KOTRA(13.3.30)

4

무역관련 제도7)

□ 수출입제도

○ 수입관리제도

- 1991년 무역자유화 조치시행 이후 대부분의 품목에 대한 수입이 자유화됨

○ 수입허가

일반 부문(General)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0여개 품목에 대해 대외무역부의 허가서가 필요함 · 잔여 10%에 해당하는 품목에 대해서는 경제부의 추천서가 부가적으로 요구됨(환경·수입쿼터 고려)
세부 부문(Specific)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개 품목군(의약품, 무기, 코콤대상품)으로 구분 경제부의 추천서가 부가적으로 필요하고, 환경, 보건, 국내산업에 대한 영향 등을 고려하여 인가함

○ 수입쿼터

- 경제부에서 관할하며, 일정기간 동안 제한된 품목에 대해선별적으로 시행함

○ 자유무역협정

CEFTA(중부유럽 자유무역협정)가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EFTA는 코메콘 붕괴 이후의 대서방 교역의존도 급증에 따른 상호 간 교역축소를 방지하기 위해 92년말 체결되어 93년부터 발효. · 1996년 1월 슬로베니아가 가입하여 현재 폴란드, 헝가리, 체코,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등 총 6개국으로 구성 · 2000년까지의 단계적인 관세감면 일정을 수립/시행하고, 2003년부터는 자유무역지대의 창설을 규정하고 있음
EU와의 준회원국 협정체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92년 3월 대EC 무역분야 준회원국협정의 발효로 EU시장에 대한 수출시 관세감면 혜택을 받았으며, 1994년 2월부터는 준회원국협정이 포괄적으로 발효되어 EU와의 연계가 보다 공고히 됨.
기타 무역협정체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FTA(European Free Trade Agreement) : 1992년 12월 · 루마니아와의 자유무역협정 : 1995년 1월

7) 자료: 한국무역협회

관세제도 및 표준규격제도

○ 관세제도

관세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HS 상품분류법을 적용 · 종가세가 대부분이며 일부 품목에 대해서만 종량세부과
관세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관세 : 자국에 최혜국 대우를 부여하지 않는 국가로부터의 수입 상품에 적용 · GATT 협정관세 : GATT 회원국에 부여하는 세율 · 특혜 관세 : 최혜국 관세율의 50%. 96년 1월 CEFTA에 가입하여 폴란드, 헝가리, 체코, 슬로베니아에 대해서는 특혜관세를 부여.
수입관련 내국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세 : 소비재 수입시 적용하며 세율은 7.5% · 부가세 : 23%
관세환급 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장 합리화를 위한 시설재 수입관세 환급 · 수출용 원자재 환급 (수출증명서 필요) · 환경개선을 위한 시설재 수입시 관세 환급
관세,비관세 장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U 회원 가입으로 한국을 포함한 EU역외권 차별관세를 적용

○ 표준규격제도

수입품 표시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용물, 사용법, 품질보증서, 기타 정보를 슬로바키아어로 표기해야 함
표준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준제도의 골격은 EU 기준에 의거하고 있음 · 표준-규격청(The Slovak Office of Standards and Metrology)에서 강제 및 자발적 인증제도를 주관하며 20개 시험소가 운영중임 · 강제인증 대상품목은 식료품, 주방용품, 의약품, 가전제품, 엔지니어링제품, 농기계, 플라스틱, 세제, 화장품, 스포츠용품 등임 · 자발적 인증은 생산자나 수입자가 희망할 경우 가능함
관세환급 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장 합리화를 위한 시설재 수입관세 환급 · 수출용 원자재 환급 (수출증명서 필요) · 환경개선을 위한 시설재 수입시 관세 환급

금융 및 외환제도

○ 금융제도

- 금융기관

- 중앙은행(NSB) : 통화정책수립과 금융기관 관리감독

- 민간은행 : 일반대출업무와 중개업무, 투자은행업무
- 외국은행
 - 지점 설립시 중앙은행의 승인이 필요
 - 외국은행은 사무소 또는 지점형태로 설립 가능하며 사무소는 본국은행을 통한 고객서비스만 가능하며 구좌개설, 대출업무는 불가하며 지점은 본국은행에서 인가한 모든 업무가 가능
 - 외국은행들의 주요 업무는 주로 국제지불 서비스와 서방고객에 대한 서비스이며 슬로바키아 기업에 대한 대출업무는 전무함⁸⁾
- 무역금융
 - 체코슬로바키아 시절 설립된 Ceskoslovenska Obchodna Banka와 수출입은행에서 무역금융 업무를 취급함
 - 수출보험공사(Export Credit Insurance Corporation)에서 수출보험 업무를 취급하고 있으며 보험부보는 수출품의 60% 이상이 국산 원자재를 사용한 경우에만 가능함
 - 일본수출입은행(JEXIM)에서는 중소·합작기업(정부지분 49% 이하), 생산·광업·서비스 분야에 대해서 총금액의 70%, 최대 5억 달러까지 자금지원함
 - European Investment Bank에서는 환경, 에너지효율개선, 관광분야에 대한 자금을 지원함

8) http://www.slovak.sk/business/banks/Banks_in_Slovakia.htm

5 슬로바키아 진출기업의 애로사항

□ 세무행정 편의적 집행

- 세무서의 임의적 판단으로 세무조사를 수행할 수 있으며, 동 세무조사가 마무리되기 전에는 부가세를 환급해 주지 않아 기업의 자금운영에 부담이 되는 경우가 많음
- 세무행정의 편의주의적인 제도로 보증세(security tax)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슬로바키아 내에서 영업행위를 수행하는 외국기업(EU 비회원국)과 일정 조건하에 거래를 하는 경우, 대금의 지급자가 거래 대금의 19%를 보증세로 납부하는 제도로써 이를 납부하지 않기 위해서는 일정의 행정절차가 요구됨

□ 세무행정 비용 과다 소요

- 슬로바키아의 회계규정은 한국과 원칙상 차이는 거의 없으나 운용상의 차이가 매우 커서 처음 진출한 한국회사의 경우 초기 행정비용이 많이 소요됨
- 국제회계기준(IFRS)의 수용에 있어서는 슬로바키아가 주변의 다른 동유럽국가보다 적극적이어서 슬로바키아 회계기준은 국제회계기준과 매우 유사함
 -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회사(은행, 대형 제조기업)인 경우에는 국제회계기준에 의한 재무제표만 작성/공시하면 됨
 - * 이 경우 슬로바키아 회계기준에 의한 재무제표 별도작성 불요
- 슬로바키아의 세무규정은 실무적용을 위한 예규/해석/판례 등이 정비되지 않아 규정에 대한 해석이 지역 세무당국마다 다르게 나타나는 현상이 있으며, 이로 인한 세무상 위험 및 행정비용이 상당함
- 우리 세법에 비하여 지출비용에 대한 업무관련성의 인정범위가 좁은 편
 - 접대비의 인정한도가 없음
 - 종업원의 복리후생비용의 경우에도 업무관련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음

□ 기타 애로사항

- 높은 실업률(2012년 14.5%)에 불구하고, 우수한 인재들은 서유럽(EU) 선진국으로 빠져나가 영어가 가능한 유능한 현지직원 채용이 곤란함
- 우리와 달리 휴가경비를 모으기 위해 일하는 국민정서로 인해 사업장 상황에 맞추어 일을 시키기가 곤란함
- 투자인센티브가 예전보다 인색하고, 단순 생산조립라인은 푸대접 하는 경향이 있음
- 현지 임금상승률이 커서 저임금 노동력의 이점이 약해짐
- 일반 물가수준에 비해 서비스 비용과 주택, 사무실 임대료가 높으며, 특히 수도권과 외국인 투자가 많이 유치된 지역의 임차료가 더 높음
- 주재원은 노동허가(work permit)와 거주허가(residence permit)를 발급받은 후 정식근무가 가능하며, 상기 허가 발급절차 및 구비서류 등이 복잡하고 발급기간이 장기간(3개월 가량) 소요됨
 - ☞ 주재원의 노동허가 기간은 통상 2년임



제 5 장 법인 설립

1. 법인
2. LLC(Limited Liability Company)
3. 주식회사(Joint Stock Company)

1 | 법인

- 개인 및 법인의 권리·의무는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사업적 관계 및 사업 조직에 대한 사항은 상법에서 규정함
- 상법 상 사업조직(Business Entities)의 정의
 - 상업등기를 한 조직(Entities)
 - 거래/특수허가에 따라 영업하는 조직
 - 특별등록을 한 개인농부
- 법에 따라 상업등기를 해야 하는 법인
 - 회사(주식회사, LLC, 파트너십 등)와 협동조합(Cooperatives)
 - 슬로바키아에서 영업하는 외국법인
 - 특별법에 따라 등록해야하는 다른 종류의 법인
- 상법에 규정된 법인 형태
 - LLC(Limited Liability Company)
 - 주식회사(Joint-Stock Company)
 - 무한책임 파트너십(General Partnership)
 - 유한책임 파트너십(Limited Partnership)
 - 협동조합(Cooperatives)

2 | LLC(Limited Liability Company)

- 슬로바키아에서 가장 많이 이용되는 회사 형태임
- 최소 1명에서 최대 50명의 설립자 참여 가능
(개인·법인 모두 가능, 국적 불문)
- 1인 회사의 경우 그 1인이 다른 회사의 1인 설립자이면 설립 불가

- 설립자들의 “설립계약서(Foundation Deed)”에 의해 설립하며, 상업 등기하는 날부터 법인격 보유

■ LLC 설립계약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

- 회사명과 소재지
- 설립자 세부명세
- 사업활동 범위
- 등록 자본금 총액 및 설립자 각각의 출자금액
- 첫 번째로 선임된 대표이사 및 대표 형태
- 첫 번째로 선임된 감사의 세부 명세(감사를 두는 경우)
- 설립자들이 납입 완료한 자본금 관리자 명세
- 법정준비금과 준비금 충당 방법
- 회사 설립 관련자에 대한 이익 지급 및 관련 허가 취득사항
- 회사 설립과 관련한 예상 소요경비
- 기타 법이 정한 사항

- 최소 자본금 €5,000, 설립자 1인당 최소 출자금 €750임
- 자본금은 설립계약서에 정해진 날까지 불입하여야 하며, 법인 성립 후 5년 이내에는 불입 완료되어야 함
- 1인 회사의 경우 법인등기 신청서 제출 전에 불입 완료되어야 하며, 다인 회사의 경우 설립자 1인당 출자금의 30% 이상, 총 자본금의 50% 이상이 법인등기 신청서 제출 전에 불입 완료되어야 함
- 현금, 현물 출자 모두 가능함
- 회사 기구 : 총회, 대표이사
- 감사를 둘 수 있으나 법적 기구는 아니며, 대리인을 둘 수 있음

■ LLC 설립 절차 ■

1단계) 대표이사의 범죄이력 없음 증명

- 영업허가를 받기 위한 전제 조건임(법인 등기와는 관련없음)

2단계) 회사명 중복여부 확인

- 상업등기소 홈페이지 통해 확인

3단계) 설립계약서 작성

- 설립계약서는 공증을 받아야 하며, 위임장을 설립계약서에 첨부

4단계) 등록된 소재지 구입·임차

- 설립계약서에 기재된 소재지를 구입하거나 임차
- 설립시 임시 소재지를 이용하고, 이후 등록 소재지를 변경가능

5단계) 지방정부에 영업허가(Trade License) 신청

- 법인등기 신청 전에 영업허가를 받아야 하며,
- 수행하는 영업종류 별로 영업허가를 획득해야 하나,
- 설립시 영업종류를 특정하지 않은 경우 일반 영업허가를 획득 후 보완
- 제출서류 : 신청서, 설립계약서, 특정 영업활동의 경우 전문성 증명 서류, 대표이사의 범죄이력 없음 증명서(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인지

6단계) 자본금 납입

- 법인등기 신청 전에 1인 회사의 경우 법인등기 신청서 제출 전에 불입 완료, 다인 회사의 경우 설립자 1인당 출자금의 30% 이상, 총 자본금의 50% 이상 이 법인등기 신청서 제출 전에 불입 완료되어야 하며,
- 납입 자본금 관리인이 작성한 설립자별 납입내역서를 첨부

7단계) 법인등기 신청

- 설립계약서 작성 완료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법인등기 신청서 제출
- 제출 서류 : 공증된 대표이사 서명이 있는 신청서, 설립계약서, 영업허가증 사본, 법인인 설립자의 법인등기 확인서, 납입 자본금 관리인이 작성한 납입내역서, 법인 소재지 건물에 대한 소유(임차) 증명서, 설립자가 LLC인 경우 동 LLC가 1인을 초과하는 설립자가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대표이사의 거주허가증, 대표이사의 서명 표본

8단계) 세무등록

- 법인등기로부터 법인세 등록은 7일 이내, 부가세 등록은 30일 이내
- 직전 12개월 수입금액이 €49,790을 초과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부가세 등록
- 고용인이 있는 경우에는 개인소득세 등록 필요

9단계) 사회보장보험 및 의료보험 등록

3

주식회사(Joint Stock Company)

- 슬로바키아에서 두 번째로 많이 이용되는 법인 형태임
- 1인 이상의 발기인(개인 또는 법인, 국적 불문)이 설립. 단, 개인이 발기인일 때는 2명 이상
- 발기인들의 “설립계약서(Foundation Deed)”에 의해 설립하며, 상업 등기하는 날부터 법인격 보유함

■ 주식회사 설립계약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

- 회사명, 소재지 및 사업활동 범위
 - 수권 자본금, 총 주식수, 주식 액면가, 주식 종류, 주식 발행가
 - 발기인의 인수 주식수
 - 현물출자명세서
 - 납입 완료한 자본금 관리자 명세
 - 회사 설립과 관련한 예상 소요경비
 - 발기 인수 설립인 경우 주주총회에서 지명된 이사 등의 명세
 - 공모 설립인 경우 공모 일자·장소, 수권 자본 초과 공모 절차, 납입 일자, 설립 주주 총회 소집 방법
 - 회사 설립 및 영업허가 획득 관련자에 대한 보상
-
- 발기 인수 설립의 경우에는 공증된 설립계약서에 정관을 첨부하며, 공모 설립의 경우 창립주주총회에서 정관 채택

■ 정관 포함 내용 ■

- 회사명, 소재지
- 수권 자본 및 납입 방법
- 총 주식수, 액면가, 주식 발행 형태
- 주주총회 소집 방법, 권한, 의사결정 방법
- 이사회 정원, 감사 정원, 권한, 의사결정 방법
- 설립 시 법정준비금 및 준비금 적립 한도, 적립 방법
- 이익 배분 방법
- 주식 대금 납입 지연에 대한 사항
- 증자·감자 방법
- 정관 개정절차

- 최소 자본금 €25,000, 현물출자 가능하나 자본금의 30% 이상을 현금 출자하여야 함
- 비상장 법인과 상장 법인으로 구분되며, 상장 법인은 그 회사의 주식이 유럽연합 내 주식시장에서 거래되는 회사를 의미함. 출석 주주 2/3이 찬성할 경우 상장법인을 비상장법인으로 전환할 수 있음
- 회사기구 : 주주총회, 이사회, 감사
- 이사회는 개인인 이사들로만 구성(국적 제한없음)되며, 감사는 3인 이상으로 구성됨
- 2013. 2월부터 주주총회 결정사항 중 상법 상 정해진 내용에 대해서는 공증이 필요함
 - ☞ 증자·감자, 대표이사의 선임·해임·보수지급, 해산, 다른 형태의 법인으로 전환, 대리인 지명·지명철회



제 6 장 부 록

1. 한슬로바키아 조세조약(2003. 7. 26 발효)
2. 조세조약(요약)
3. 노동법
4. 관련 기관 및 사이트

1 | 한·슬로바키아 조세조약(2003. 7. 26 발효)

제1조 【인적범위】

1. 이 협약은 일방 또는 양 체약국의 거주자인 인에게 적용한다.

제2조 【대상조세】

1. 이 협약은 그 조세가 부과되는 방법 여하에 불구하고 각 체약국 또는 그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공공단체가 부과하는 소득에 대한 조세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자본증가에 대한 조세는 물론, 동산 또는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에 대한 조세 및 기업이 지불한 노동임금총액에 대한 조세를 포함하여 총소득 또는 소득의 요소에 부과되는 모든 조세는 소득에 대한 조세로 본다.
3. 이 협약이 적용되는 현행 조세는 다음과 같다.
 - 가. 한국에 있어서는,
 - (1) 소득세
 - (2) 법인세
 - (3) 주민세 및
 - (4) 농어촌특별세(이하 "한국의 조세"라 한다)
 - 나. 슬로바키아에 있어서는,
 - (1) 개인소득세
 - (2) 법인소득세 및
 - (3) 부동산세(이하 "슬로바키아의 조세"라 한다)
4. 이 협약은 이 협약의 서명일 이후에 현행 조세에 추가하여 부과되거나 현행 조세에 대체하여 부과되는 동일한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조세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양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자국 세법의 실질적인 개정사항을 상호 통보한다.

제3조 【일반적 정의】

1. 문맥에 따라 달리 해석되지 아니하는 한, 이 협약에서

가. "한국"이라 함은 국제법에 따라서, 해상과 하층토 및 그들의 천연자원에 대하여 대한민국의 주권이 행사될 지역으로 대한민국의 법에 의하여 지정되어 왔거나 지정될 대한민국의 영해에 인접한 지역을 포함하는 대한민국의 영역을 말한다.

나. "슬로바키아"라 함은 슬로바키아공화국을 말한다.

다. "일방체약국" 및 "타방체약국"이라 함은 문맥에 따라 한국 또는 슬로바키아를 말한다.

라. "인"이라 함은 개인, 회사 및 기타 인의 단체를 포함한다.

마. "법인"이라 함은 법인격이 있는 단체 또는 조세 목적상 법인격이 있는 단체로 취급되는 실체를 말한다.

바. "일방체약국의 기업" 및 "타방체약국의 기업"이라 함은 각각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경영되는 기업과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경영되는 기업을 말한다.

사. "국민"이라 함은 다음을 말한다.

(1) 일방체약국의 국적을 가진 개인

(2) 일방체약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법에 의하여 그러한 지위를 부여받은 법적 인격체, 조합 및 단체

아. "국제운수"라 함은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운영하는 선박,보트 또는 항공기에 의한 운송을 말한다. 다만, 선박,보트 또는 항공기가 타방체약국안의 장소 사이에서만 운영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자. "권한있는 당국"이라 함은 다음을 말한다.

(1) 한국의 경우,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그의 대리인

(2) 슬로바키아의 경우, 슬로바키아공화국의 재무부장관 또는 그의 대리인

2. 일방체약국이 이 협약을 적용함에 있어서 정의되어 있지 아니한 용어는 문맥에 따라 달리 해석되지 아니하는 한, 이 협약이 적용되는 조세에 관련된 체약국의

법에 따른 의미를 가진다.

제4조 【거주자】

1. 이 협약에서 "일방체약국의 거주자"라 함은 그 국가의 법에 따라 그의 주소,거소,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소재지, 관리장소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다른 기준에 의하여 그 국가에서 납세의무가 있는 인을 말한다. 그러나, 이 용어는 동 국내의 원천소득에 대하여만 동 국에서 납세의무가 있는 인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이 양 체약국의 거주자가 되는 경우, 그의 지위는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
 - 가. 동 개인은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는 국가의 거주자로 본다. 동 개인이 양 국가안에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는 경우, 동 개인은 그의 인적 및 경제적 관계가 더욱 밀접한(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국가의 거주자로 한다.
 - 나. 동 개인의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있는 체약국을 결정할 수 없거나 또는 어느 국가에도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 동 개인은 그가 일상적인 거소를 두고 있는 국가의 거주자로 본다.
 - 다. 동 개인이 양 국가안에 일상적인 거소를 두고 있거나 또는 어느 체약국안에도 일상적인 거소를 두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 동 개인은 그가 국민인 국가의 거주자로 본다.
 - 라. 동 개인이 양 국가의 국민이거나 또는 양국중 어느 국가의 국민도 아닌 경우,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이 상호합의에 의하여 문제를 해결한다.
3. 제1항의 규정으로 인하여 개인 이외의 인이 양 체약국의 거주자로 되는 경우, 그는 그의 실질적인 관리장소가 소재하는 체약국의 거주자로 본다. 의문이 있는 경우,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이 상호 합의에 의하여 문제를 해결한다.

제5조 【고정사업장】

1. 이 협약의 목적상 "고정사업장"이라 함은 기업의 사업이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

- 로 영위되는 사업상의 고정된 장소를 말한다.
2. "고정사업장"이라 함은 특히 다음을 포함한다.
 - 가. 관리장소
 - 나. 지 점
 - 다. 사 무 소
 - 라. 공 장
 - 마. 작 업 장
 - 바. 광산,유전,가스천,채석장 기타 천연자원의 채취장소
 3. 건축장소 또는 건설,조립,설치공사는 9월을 초과하여 존속하는 경우에만 고정사업장이 된다.
 4. 이 조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고정사업장"은 다음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 가. 기업에 속하는 재화나 상품의 저장,전시 또는 인도의 목적만을 위한 시설의 사용
 - 나. 저장,전시 또는 인도의 목적만을 위한 그 기업 소유의 재화 또는 상품의 재고 보유
 - 다. 다른 기업에 의한 가공의 목적만을 위하여 그 기업에 속하는 재화 또는 상품의 재고 보유
 - 라. 기업을 위한 재화나 상품의 구입 목적 또는 정보의 수집만을 위한 고정된 사업장소의 유지
 - 마. 기업을 위한 예비적이고 보조적인 성격을 가지는 광고,정보의 공급, 과학적인 연구 또는 유사 활동만을 위한 고정된 사업장소의 유지
 - 바. "가"호 내지 "마"호에 규정된 활동의 복합만을 위한 고정된 사업장소의 유지. 다만, 동 복합으로부터 초래되는 고정된 사업장소의 전반적인 활동이 예비적이고 보조적인 성격의 것이어야 한다.
 5.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6항이 적용되는 독립적 지위를 가지는 대리인 이외의 인이 어느 기업을 위하여 활동하며 일방채약국에서 그 기업 명의

의 계약체결권을 상시 행사하는 경우에는, 그 기업은 동 인이 그 기업을 위하여 수행하는 활동에 관하여 동 국안에 고정사업장을 가지는 것으로 본다. 다만, 동 인의 활동이 사업상 고정된 장소에서 행하여진다 할지라도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업상 고정된 장소가 고정사업장으로 되지 아니하는 활동에 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이어야 한다.

6. 어느 기업이 일방체약국에서 중개인, 일반 위탁매매인 또는 독립적 지위를 가진 기타 대리인을 통하여 사업을 정상적으로 수행하는 한 동인들을 통하여 사업을 경영한다는 이유만으로, 동 기업이 일방체약국에 고정사업장을 가지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7.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이 타방국의 거주자인 법인 또는 타방국에서 (고정사업장을 통하거나 또는 다른 방법에 의하여) 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을 지배하거나 또는 그 법인에 의하여 지배되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 어느 일방법인이 타방법인의 고정사업장으로 되지는 아니한다.

제6조 【부동산 소득】

1. 농업 및 임업소득을 포함하여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부동산으로부터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취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부동산"이라 함은 당해 재산이 소재하는 체약국의 법에서 가지는 의미를 가진다. 이 용어는 어떠한 경우에도 부동산에 부속되는 재산, 농업과 임업에 사용되는 가축 또는 장비, 토지재산에 관한 일반법의 규정이 적용되는 권리, 부동산의 용익권, 광산, 광천 및 기타 천연 자원의 채취 또는 채취할 권리에 대한 대가인 가변적 또는 고정적인 지급금에 대한 권리를 포함한다. 선박, 보트 및 항공기는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한다.
3. 제1항의 규정은 부동산의 직접사용, 임대 또는 기타 형태의 사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적용한다.
4.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은 기업의 부동산으로부터 생기는 소득과 독립적 인적 용역의 수행을 위하여 사용되는 부동산으로부터 생기는 소득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7조 【사업이윤】

1. 일방체약국 기업의 이윤에 대하여는, 그 기업이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동 타방체약국에서 사업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한, 동 일방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기업이 위와 같이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그 기업의 이윤중 동 고정사업장에 귀속시킬 수 있는 이윤에 대하여만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제3항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동 타방체약국에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동 고정사업장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조건하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활동에 종사하며 또한 동 고정사업장이 속하는 기업과 전적으로 독립하여 거래하는 별개의 분리된 기업이라고 가정하는 경우에, 동 고정사업장이 취득할 것으로 기대되는 이윤은 각 체약국에서 동 고정사업장에 귀속된다.
3. 고정사업장의 이윤을 결정함에 있어서, 경영비와 일반관리비를 포함하여 동 고정사업장의 목적을 위하여 발생된 경비는 동 고정사업장이 소재하는 국내에서 또는 다른 곳에서 발생하는가에 관계없이 비용공제가 허용된다.
4. 기업의 총이윤을 여러 부분에 배분하여 고정사업장에 귀속시킬 이윤을 결정하는 것이 일방체약국에서 관례로 되어 있는 한, 제2항의 규정은 동 일방 체약국이 관례적인 그러한 배분방법에 의하여 과세될 이윤을 결정하는 것을 제외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채택된 배분방법은 그 결과 이 조에 포함된 원칙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5. 어떠한 이윤도 고정사업장이 당해 기업을 위하여 재화 또는 상품을 단순히 구매한다는 이유만으로 동 고정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한다.
6. 이 조 전항들의 목적상,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이윤은 그에 반대되는 타당하고 충분한 이유가 없는 한 매년 동일한 방법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7. 이윤이 이 협약의 다른 조항에서 별도로 취급되는 소득의 항목을 포함하는 경우, 그 다른 조항의 규정은 이 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제8조 【해운 및 항공운수】

1. 국제운수상 선박 또는 항공기의 운항으로부터 발생하는 일방체약국 기업의 이윤에 대하여는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2. 제1항의 규정은 공동계산, 합작사업 또는 국제경영체에 참가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윤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9조 【특수관계기업】

- 가.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 기업의 경영, 지배 또는 자본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참여하거나,
- 나. 동일인이 일방체약국의 기업과 타방체약국 기업의 경영, 지배 또는 자본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참여하는 경우,
그리고 위의 어느 경우에 있어서도 양 기업간 상업상 또는 재정상의 관계에 있어서 독립기업간에 설정되는 조건과 다른 조건이 설정되거나 부과된 경우 동 조건이 없었더라면 일방기업의 이윤이 되었을 것이 동 조건으로 인하여 그러한 이윤으로 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동 기업의 이윤에 가산되며 이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제10조 【배당】

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이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배당에 대하여는 동 타방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러나, 그러한 배당에 대하여는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거주자인 체약국에서도 동 국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다만, 수취인이 그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다음을 초과할 수 없다.
 - 가. 그 수익적 소유자가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 자본의 최소한 25퍼센트를 직접 소유하는 법인(조합은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배당총액의 5퍼센트
 - 나. 기타의 모든 경우에는 배당총액의 10퍼센트
 이 항의 규정은 배당의 지급원인이 되는 이윤에 대한 법인의 과세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3. 이 조에서 사용되는 "배당"이라 함은 주식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 또는 채권이 아닌 이윤에 참가하는 기타의 권리로부터 발생하는 소득, 분배를 행하는 법인이 거주자로 되어 있는 국가의 법에 의하여 주식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과 동일한 과세상의 취급을 받는 기타의 법인의 권리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4.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가 그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거주자로 되어 있는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그곳에서 사업을 경영하거나, 동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시설을 통하여 그 곳에서 독립적 인적용역을 수행하며 또한 그 배당의 지급원인이 되는 지분이 그러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제7조 또는 제1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5.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이 타방체약국으로부터 이윤 또는 소득을 취득하는 경우, 비록 지급된 배당 또는 유보이윤이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동 타방체약국에서 발생한 이윤 또는 소득으로 구성되어 있다 할지라도, 동 타방체약국은 그러한 배당이 동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거나 또는 그 배당의 지급원인이 되는 지분이 동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 법인에 의하여 지급되는 배당에 대하여 과세할 수 없으며, 동 법인의 유보이윤을 유보이윤에 대한 조세의 대상으로 할 수 없다.

제11조 【이자】

1.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여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이자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러나, 그러한 이자는 그 이자가 발생하는 체약국에서도 동 국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다만, 수취인이 동 이자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이자총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3.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 가.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여 타방체약국의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 당국을 포함한 타방체약국의 정부.중앙은행 또는 정부에 의하여 소유되는 금융기관에 지급되는 이자 및 타방체약국의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당국을 포함한 타방체약국의 정부.중앙은행 또는 정부에 의하여 소유되는 금융기관에 의하여 간접적으로 조달되거나 보증된 채권과 관련하여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이자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 나. 산업적.상업적 또는 학술적 장비의 신용판매와 관련하여 지불되는 이자 및 상품의 신용판매와 관련하여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의 기업에게 지급하는 이자에 대하여는 그 수익자가 거주자인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4. 제3항의 목적상 "중앙은행 및 정부에 의해 소유되는 금융기관"이라 함은 다음을 말한다.
- 가. 한국에 있어서는,
- (1) 한국은행
 - (2) 한국수출입은행
 - (3) 한국산업은행
 - (4) 자본금이 한국정부에 의하여 소유되고 양 체약국 정부간에 수시로 합의하는 기타 금융기관
- 나. 슬로바키아에 있어서는,
- (1) 슬로바키아 국립은행
 - (2) 자본금이 슬로바키아공화국 정부에 의하여 소유되고 양 체약국 정부간에 수시로 합의하는 기타 금융기관
5. 이 조에서 "이자"라 함은 저당 여부와 채무자의 이윤에 대한 참가권의 수반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종류의 채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과 특히 국채.공채 또는 사채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을 말하며, 이러한 국채.공채와 사채에 부수되는 프리미엄과 장려금을 포함한다.
6.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이자의 수익적 소유자가 그 이자가 발생하는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그곳에서 사업을 경

영하거나 동 타방채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시설을 통하여 그곳에서 독립적 인적 용역을 수행하며, 또한 그 이자의 지급원인이 되는 채권이 그러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제7조 또는 제1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7. 이자는 그 지급인이 일방채약국, 그 정치적 하부조직, 지방자치단체 또는 동 국의 거주자인 경우, 그 일방채약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그러나 일방채약국의 거주자인지 아닌지를 불문하고, 이자를 지급하는 인이 동 일방채약국안에 그 이자의 지급원인이 되는 채무의 발생과 관련되는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고 그 이자가 그러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에 의하여 부담되는 경우, 그러한 이자는 동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이 소재하는 국가에서 발생한 것으로 본다.
8.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간 또는 그 양자와 기타인간의 특수관계로 인하여 이자의 지급액이, 그 지급의 원인이 되는 채권을 고려할 때, 그러한 관계가 없었더라면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간에 합의되었을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이 조의 규정은 뒤에 언급된 금액에 대하여만 적용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그 지급액의 초과부분은 이 협약의 다른 규정을 적절히 고려하여 각 채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한다.

제12조 【사용료】

1. 일방채약국에서 발생하여 타방채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사용료에 대하여는 타방채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러나, 제3항 가호에 규정된 사용료는 동 사용료가 발생하는 채약국에서도 동국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다만, 수취인이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제3항 나호에 규정된 사용료는 사용료가 발생하는 채약국에서 면세된다.
3. 이 조에서 "사용료"라 함은 다음에 열거하는 항목들의 사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권리로부터 지급되는 금액을 말한다.
 - 가. 특허권.상표권.의장 또는 신안.도면.비밀공식 또는 비밀공정, 산업적.상업적

또는 학술적 장비, 산업적·상업적 또는 학술적 경험에 관한 정보
 나. 문학작품·예술작품 또는 영화필름,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방송용 필름 또는
 테이프를 포함하는 학술작품의 저작권

4.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사용료의 수취인이 그 사용료
 가 발생하는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그곳에서 사업을 경영
 하거나, 동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시설을 통하여 그곳에서 독립적 인적용역
 을 수행하며, 또한 그 사용료의 지급원인이 되는 권리 또는 재산이 그러한 고정
 사업장이나 고정시설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
 한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제7조 또는 제1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5. 사용료의 지급인이 일방체약국 자신, 그 정치적 하부조직, 지방자치단체 또는 동
 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 그 사용료는 동 체약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그러
 나, 사용료의 지급인이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지 아닌지에 관계없이 일방체약국
 안에 그 사용료를 지급하여야 할 의무의 발생과 관련되는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
 시설을 가지고 있고, 그 사용료가 동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에 의하여 부담되
 는 경우 그러한 사용료는 동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이 소재하는 체약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6.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간 또는 그 양자와 기타인간의 특수관계로 인하여 사용
 료의 지급액이, 그 지급의 원인이 되는 사용·권리 또는 정보를 고려할 때, 그러한
 특수관계가 없었더라면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간에 합의되었을 금액을 초과하
 는 경우, 이 조의 규정은 나중에 규정된 금액에 대하여만 적용된다. 그러한 경우
 에 그 지급액의 초과부분은 이 협약의 다른 규정을 적절히 고려하여 각 체약국
 의 법에 따라 과세한다.

제13조 【양도소득】

1. 제6조에 규정된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부동산의 양도로부터 일방체약국의 거주
 자가 얻는 이득에 대하여는 동 타방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안에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의 사업상 재산의

일부를 형성하는 동산 또는 독립적 인적 용역을 수행하는 목적상 타방채약국에서 일방채약국 거주자에게 이용 가능한 고정시설에 속하는 동산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이득 및 그러한 고정사업장(단독으로 또는 기업체와 함께) 또는 고정시설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이득에 대하여는 동 타방채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3. 국제운수에 운항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양도 또는 그러한 선박 또는 항공기의 운영에 관련되는 동산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이득에 대하여는 당해 기업이 거주자인 채약국에서만 과세한다.
4. 제1항, 제2항 및 제3항에 규정된 재산 이외의 재산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이득에 대하여는 그 양도인이 거주자인 채약국에서만 과세한다.

제14조 【독립적 인적 용역】

1. 일방채약국의 거주자가 전문직업적 용역 또는 독립적 성격의 기타 활동과 관련하여 취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동 인이 그의 활동을 수행하는 목적상 타방채약국에 그가 정기적으로 이용하는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는 한, 동 일방채약국에서만 과세한다. 그가 그러한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는 경우, 당해 소득은 타방채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으나, 단지 동 고정시설에 귀속되는 부분에 한한다.
2. "전문직업적 용역"이라 함은 의사.변호사.기사.건축가.치과의사 또는 회계사의 독립적인 활동은 물론 특히 독립적인 학술.문학.예술.교육 또는 교수활동을 포함한다.

제15조 【종속적 인적 용역】

1. 제16조.제18조.제19조.제20조 내지 제21조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고용과 관련하여 일방채약국의 거주자가 취득하는 급료.임금 및 기타 유사한 보수에 대하여는 그 고용이 타방채약국에서 수행되지 아니하는 한, 동 일방채약국에서만 과세한다. 다만, 그 고용이 타방채약국에서 수행되는 경우 동 고용으로부터 발생하는 보수는 동 타방채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방채약국의 거주자가 타방채약국안에서 수행한

고용과 관련하여 취득하는 보수에 대하여는 다음의 모든 조건들이 충족될 경우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 가. 수취인이 관련된 어느 12월 기간중 총 183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단일기간 또는 제 기간동안 타방체약국에 체재하고,
 - 나. 그 보수가 타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아닌 고용주에 의하여 또는 그를 대신하여 지급되며,
 - 다. 그 보수가 타방체약국안에 고용주가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에 의하여 부담되지 아니하는 경우
3. 이 조 전항들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방체약국의 기업에 의하여 국제운수에 운항되는 선박이나 항공기에 탑승하여 수행되는 고용에 대한 보수에 대하여는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제16조 【이사의 보수】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의 이사회 또는 기타 유사한 기관의 구성원의 자격으로 취득하는 이사의 보수 및 기타 유사한 지급금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제17조 【연예인 및 체육인】

- 1.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연극, 영화,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의 연예인이나 음악가와 같은 연예인 또는 체육인인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타방체약국에서 수행하는 인적활동으로부터 취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 2. 연예인이나 체육인이 그러한 자격으로 일방체약국에서 수행한 인적활동에 관한 소득이 그 연예인 또는 체육인 자신에게 귀속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는, 제7조,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동 소득에 대하여는 그 연예인 또는 체육인의 활동이 수행되는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 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양 체약국의 정부간에 합의된 특별한 문화

교류계획에 의하여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연예인 또는 체육인이 타방체약국에서 수행한 활동으로부터 얻는 소득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의 조세로부터 면세한다.

제18조 【연금】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과거의 고용에 대한 대가로서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연금 및 기타 유사한 보수에 대하여는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제19조 【정부용역】

1. 가. 일방체약국, 그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자치단체에게 제공되는 용역과 관련하여 동 일방체약국, 그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 자치단체가 개인에게 지급하는 연금 이외의 보수에 대하여는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나. 그러나 그러한 보수는 만약 그 용역이 타방체약국에서 제공되고 그 개인이 다음에 해당하는 동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 동 국에서만 과세된다.

(1) 동 국의 국민인 자,

(2) 단지 그 용역제공만을 목적으로 동국의 거주자가 되지 아니한 자

2. 가. 일방체약국, 그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자치단체에게 제공되는 용역과 관련하여 동 일방체약국, 그 하부조직 또는 자치단체가 직접 또는 이들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으로부터 개인에게 지급하는 연금에 대하여는 동 국에서만 과세한다.

나. 그러나 그러한 연금에 대하여는 그 개인이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이며 국민인 경우 동 국에서만 과세한다.

3. 제15조.제16조 및 제18조의 규정은 일방체약국, 그 정치적 하부 조직 또는 지방 자치단체에 의하여 수행되는 사업과 관련하여 제공되는 용역에 대한 보수에 대하여 적용한다.

4.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한국의 경우 한국은행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그리

고 슬로바키아의 경우 슬로바키아 국립은행과 슬로바키아 무역투자진흥기관이 지급하는 보수 또는 연금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20조 【학생】

1. 타방계약국의 거주자이거나 일방계약국을 방문하기 직전에 타방계약국의 거주자이었으며 단지 그의 교육 또는 훈련의 목적만으로 동 일방계약국에 체재하는 학생 또는 사업견습생이 자신의 생계·교육 또는 훈련목적으로 받는 지급금에 대하여는, 그러한 지급금이 동 일방계약국의 국외원천으로부터 발생하는 한, 동 일방계약국에서 과세하지 아니한다.
2. 일방계약국의 대학 또는 기타 고등교육기관에 있는 학생 또는 사업견습생이 관련된 어느 12월 기간중 총 183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단일기간 또는 제기간동안 타방계약국안에 체재하며, 현재 또는 방문직전 일방계약국의 거주자였던 경우 용역활동이 교육 또는 견습과 관련이 있고 보수가 생계유지에 필요한 수준인 한 동 보수에 대하여 타방계약국으로부터 과세되지 아니한다.

제21조 【교수 및 연구자】

일방계약국의 거주자이거나 타방계약국을 방문하기 직전에 일방계약국의 거주자이었으며, 타방계약국의 종합대학·단과대학·연구기관 또는 타방계약국의 정부에 의하여 승인된 기타 유사한 기관의 초청으로, 그러한 기관에서 강의·연구 또는 강의와 연구 양자를 위한 목적만으로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동안 동 타방계약국을 방문하는 개인은 그러한 강의 또는 연구로부터 취득하는 보수에 대하여 동 타방계약국에서 면세된다.

제22조 【기타소득】

1. 이 협약의 전기 각 조에서 취급되지 아니한 일방계약국 거주자의 소득항목에 대하여는, 그 소득의 발생지를 불문하고, 동 국에서만 과세한다.
2. 제1항의 규정은, 일방계약국의 거주자인 그러한 소득의 수취인이 타방계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그곳에서 사업을 경영하거나 동 타방채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시설을 통하여 그곳에서 독립적 인적용역을 수행하고, 또한 그 소득의 지급원인이 되는 권리 또는 재산이 그러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제6조 제2항에 규정된 부동산소득 이외의 소득에 대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제7조 또는 제1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23조 【이중과세의 회피】

1. 한국 거주자의 경우, 이중과세는 다음과 같이 회피된다. 한국 이외의 국가에서 납부한 조세에 대하여 허용하는 한국의 조세로부터의 세액공제에 관한 한국세법의 규정(이 항의 일반적인 원칙에 영향을 미쳐서는 아니된다)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슬로바키아내의 원천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 직접적이든 공제에 의해서든, 슬로바키아법과 이 협약에 의하여 납부할 슬로바키아의 조세(배당의 경우에 배당이 지급되는 이윤에 대하여 납부되는 조세는 제외한다)는 동 소득에 대하여 납부할 한국의 조세로부터 세액공제가 허용된다. 그러나 그 세액은 슬로바키아내의 원천에서 생긴 소득이 한국조세의 납부대상이 되는 전체소득에서 차지하는 한국의 조세의 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
2. 슬로바키아 거주자의 경우, 이중과세는 다음과 같이 회피된다. 슬로바키아는 그의 거주자에 대한 조세부과시 과세표준에 이 협약의 제규정에 의하여 한국에서 과세될 수 있는 소득항목을 포함시킬 수 있다. 그러나, 동 과세표준으로 계산된 산출세액으로부터 한국에서 납부한 세액과 동일한 금액을 공제로서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그러한 공제는 이 협약의 제규정에 의하여 한국에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에 상응하는 공제가 주어지기 전에 계산되는 슬로바키아 조세의 해당부분을 초과할 수 없다.
3. 제1항 및 제2항의 목적상, 일방채약국에서 배당·이자·사용료에 대하여 납부한 세액은 동 채약국에서 경제개발증진을 위한 조세유인계획에 따라 경감되거나 면세하였을지라도 그렇지 아니할 경우 이 협약의 제규정에 의하여 납부해야 할 세액

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제24조 【무차별】

1. 일방체약국의 국민은 동일한 상황에 있는 타방체약국의 국민이 부담하거나 부담 할지도 모르는 조세 및 이와 관련된 요건과 다르거나 그보다 더 과중한 조세 또는 이와 관련된 요건을 동 타방체약국에서 부담하지 아니한다. 이 규정은 제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방 또는 양 체약국의 거주자가 아닌 인에게도 적용한다.
2.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안에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에 대한 조세는 동일한 활동을 수행하는 동 타방체약국의 기업에 부과되는 조세보다 불리하게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 조의 어떠한 규정도 일방체약국에 대하여 시민의 지위 또는 가족부양 책임으로 인하여 자국 거주자에게 부여하는 조세 목적상 어떠한 인적 공제·구제 및 경감을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부여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3. 제9조·제11조 제8항 또는 제12조 제6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이자·사용료 및 기타 지급금은, 그러한 기업의 과세이윤을 결정하기 위한 목적상, 이들이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었을 때와 동일한 조건으로 공제한다.
4. 일방체약국 기업 자본의 전부 또는 일부가 1인 또는 그 이상의 타방체약국 거주자에 의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되거나 지배되는 경우, 그 기업은 동 일방체약국의 다른 유사한 기업이 부담하거나 부담할지도 모르는 조세 또는 이와 관련된 요건과 다르거나 그보다 더 과중한 조세 또는 이와 관련된 요건을 동 일방체약국에서 부담하지 아니한다.
5. 제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조의 규정은 모든 종류 및 명칭의 조세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5조 【상호합의절차】

1. 일방체약국 또는 양 체약국의 조치가 어느 인에 대하여 이 협약의 규정에 부합되

지 아니하는 과세상의 결과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것이라고 동 인이 여기는 경우, 그는 양 체약국의 국내법에 규정된 구제수단에도 불구하고, 그가 거주자로 되어 있는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에 또는 그의 문제가 이 협약 제24조 제1항에 해당 되는 경우 그가 국민인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에 그의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동 문제는 이 협약의 제 규정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과세상의 결과를 초래하는 조치의 최초통보일로부터 3년이내에 제기되어야 한다.

2. 동 문제제기가 정당하다고 인정되거나 스스로 만족할 만한 해결에 도달할 수 없는 경우, 권한있는 당국은 이 협약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과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타 방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과 상호 합의에 의하여 그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3.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이 협약의 해석 또는 적용에 관하여 발생하는 곤란 또는 의문을 상호 합의에 의하여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또한 양 당국은 이 협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경우에 있어서의 이중과세의 회피를 위하여도 상호 협의할 수 있다.
4.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전항들이 의미하는 합의에 도달하기 위한 목적으로 상호간에 직접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 합의에 도달하기 위하여 구두로 의견교환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 경우, 그러한 의견교환은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의 대표로 구성되는 위원회를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

제26조 【정보교환】

1.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이 협약의 제 규정을 시행하거나 또는 당해 국내법에 의한 과세가 이 협약의 규정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이 협약의 적용대상이 되는 조세에 관한 체약국의 국내법 규정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교환한다. 정보의 교환은 제1조에 의하여 제한되지 아니한다. 일방체약국이 입수하는 정보는 동국의 국내법에 의하여 입수되는 정보와 동일하게 비밀로 취급되며, 이 협약이 적용되는 조세의 부과, 징수나 그와 관련된 강제집행, 소추 또는 불복신청의 결정에 관련되는 인 또는 당국(사법, 행정기관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만 공개된다. 그러한 인 또는 당국은 당해 목적을 위하여만 그 정보를 사용한다. 그 정보를 공개 법정

절차 또는 사법적 판결에서 공개할 수 있다.

2. 어떠한 경우에도 제1항의 규정은 일방체약국에 대하여 다음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가. 일방 또는 타방체약국의 법률 및 행정관행에 저촉되는 행정적 조치를 수행하는 것

나. 일방 또는 타방체약국의 법률에 따라 또는 행정의 통상적인 과정에서 입수할 수 없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

다. 교역상.사업상.산업상.상업상 또는 전문직업상의 비밀 또는 거래과정을 공개하는 정보, 또는 공개하는 것이 공공정책(공공질서)에 배치될 정보를 제공하는 것

제27조 【외교관 및 영사관원】

이 협약의 어떠한 규정도 국제법의 일반원칙 또는 특별협정의 제 규정에 따른 외교관 또는 영사관원의 재정상의 특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28조 【발효】

1. 이 협약은 비준되어야 하며, 비준서는 가능한 한 조속히 교환되어야 한다. 이 협약은 비준서의 교환일에 효력을 발생한다.

2. 이 협약은 다음에 대하여 효력을 가진다.

가. 원천징수되는 조세에 관하여는, 이 협약이 발효되는 날 이후에 비거주자에게 지급 또는 대기되는 금액에 대하여

나. 기타의 조세에 관하여는, 이 협약이 발효되는 연도의 1월 1일 이후에 개시되는 과세연도에 대하여

제29조 【종료】

이 협약은 무기한으로 효력을 가지나, 각 체약국은 비준서가 교환된 연도이후 5년째부터 어느 연도의 6월 30일 이전에 외교경로를 통하여 서면으로 타방체약국에 대

하여 종료를 통고할 수 있다. 그러한 경우 이 협약은 다음에 대하여 효력이 정지된다.

가. 원천징수되는 조세에 관하여는, 종료 통보가 행하여진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1일 이후에 비거주자에게 지급 또는 대기되는 금액에 대하여

나. 기타의 조세에 관하여는, 종료통보가 연도의 행하여진 다음 연도 1월 1일 이후에 개시되는 과세연도에 대하여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약에 서명하였다.

2001년 8월 27일 서울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 슬로바키아어 및 영어로 각 2부를 작성하였다. 해석상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2 조세조약(요약)

구 분	조	국내원천소득 과세권 관련 주요내용
대상조세	§2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농특세
거주자	§4	슬로바키아에서 납세의무가 있는 인(개인, 법인, 기타 단체) * 그 국가내의 원천소득에 대해서만 납세의무가 있는 인은 제외
부동산소득	§6	국내 소재 부동산소득은 과세
사업이윤	§7	국내 소재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그 고정사업장 귀속 이윤에 대해 과세
해운 및 항공운수	§8	슬로바키아 기업의 국제운수 선박·항공기 운항소득은 면세
배당	§10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국내 거주자(법인)인 경우 과세 단, 배당수취인이 수익적소유자인 경우 다음의 세율로 과세 ○수익적소유자가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 자본의 25%이상을 직접 소유하는 법인(조합은 제외)인 경우 배당총액의 5% ○그 밖의 경우 배당총액의 10%
이자	§11	이자가 국내에서 발생(지급)하는 경우 과세 단, 이자수취인이 수익적소유자인 경우 다음의 세율로 과세 ○이자총액의 10% * 이자수취인이 슬로바키아 정부 등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면세 · 정부, 슬로바키아 국립은행, 정부간 합의하는 기타 금융기관 * 위 정부 등에 의하여 간접적으로 조달되거나 보증된 채권 관련 이자는 면세 * 산업적·상업적·학술적 장비의 신용판매 관련 이자 및 상품의 신용판매 관련이자는 면세
사용료	§12	사용료가 국내에서 발생(지급)하는 경우 과세 단, 사용료수취인이 수익적소유자인 경우 다음의 세율로 과세 ○사용료총액의 10% * 산업적·상업적·학술적 장비의 사용이나 사용권에 대한 대가는 사용료에 포함
양도소득	§13	· 국내 소재 부동산양도소득은 과세 · 국내 고정사업장 및 사업용 동산 양도소득 과세 · 국제운수 선박·항공기와 그 선박·항공기 운항에 관련되는 동산양도소득은 면세 · 위 이외의 재산 양도소득은 면세

발효 : '03.07.08 적용시기 : '03.07.08이후 지급분

구 분	조	국내원천소득 과세권 관련 주요내용
독립적 인적용역소득	§14	국내 고정시설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해 과세 * 거주자(개인, 법인, 기타 단체) 적용
종속적 인적용역	§15	고용활동이 국내에서 수행되는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과세 ○보수 수취인이 어느 12월 기간중 총 183일을 초과하는 단일 또는 제기 간 동안 국내에 체재 ○보수가 국내 거주자에 의하여 또는 그를 대신하여 지급 ○보수가 국내에 그 고용주가 보유하고 있는 고정사업장(고정시설)에 의하 여 부담되는 경우 슬로바키아 기업의 국제운수 선박·항공기에 탑승하여 수행되는 고용활동 에 관한 보수는 면세
이사의 보수	§16	국내 법인의 이사회 또는 유사기관의 구성원의 자격으로 취득하는 보수는 과세
예능인 및 체육인	§17	국내에서 수행하는 인적활동 소득은 과세 그 소득이 타인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도 과세 * 정기간 합의된 문화교류계획에 의한 경우 면세
연금	§18	과거의 고용에 대한 대가로서 슬로바키아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연금과 유 사보수는 면세
정부용역	§19	슬로바키아 정부에게 용역이 국내에서 제공되고 그 개인이 다음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보수는 국내에서만 과세 ○우리나라 거주자인 국민 ○단지 그 용역의 제공만을 목적으로 국내 거주자가 되지 아니한 자 슬로바키아 정부로부터 연금을 지급받는 개인이 국내 거주자이며 국민인 경우 그 연금은 국내에서만 과세 * 슬로바키아 국립은행, 무역투자진흥기관에 대해서도 동 조항 적용
학생	§20	생계, 교육 또는 훈련목적으로 해외로부터 발생한 지급금은 면세 * 교육·견습과 관련이 있고 12월 기간 중 183일 미만 체재하며 생계유지 에 필요한 수준의 용역보수도 면세
교수·교사 및 연구원	§21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그 강의 또는 연구 보수에 대해 면세 ○국내 방문직전에 슬로바키아 거주자 ○국내 대학·연구기관·승인된 유사기관이 초청 ○동 초청기관에서 강의·연구 목적만으로 방문 ○2년 이하의 기간동안 방문
그 밖의 소득	§22	위에서 취급되지 아니한 소득은 면세

3 | 노동법

□ 고용 계약

- ACT 311/2001은(노동법 체계로써 후에 수정되어 짐) 법인이나 자연인을 위한 자연인의 종속적인 업무수행과 관련된 개인의 노동법 관계와 단체의 노동법 관계를 규정
- 노사관계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특별고용 계약한 날 성립, 고용은 사업주와 근로자 사이에 작성된 고용계약서에 의해 성립, 사업주는 고용계약서 사본 1부를 근로자에게 제공해야 함
- 고용계약의 항목(조항)
 - 직무(근로자가 고용되어 하는 일, 직무기술서)
 - 직무장소(행정당국 그리고 분점 또는 특정한 곳)
 - 고용시작일
 - 단체협약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임금 산정기간도 명시
- 사업주는 고용계약서에 앞서 언급한 사항 외에 작업조건, 임금지급일, 근로시간, 휴가기간, 인사발령이나 징계 등에 대한 공지기간 등을 포함해야 함
 - 고용은 고용계약서에 언급되어 있듯이 근로가 시작된 날에 성립
 - 고용계약의 양측은 3개월 한도로 견습기간을 설정하며, 견습기간은 서면으로 작성
- 1명의 근로자는 사업주와 몇 개의 고용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나, 이 경우 각각 다른 직무일 경우에 한정하며 그러한 고용계약에 나타난 권리와 의무는 개별적으로 적용

□ 근로 시간

- 노동법이 다르게 규정하지 않는 경우, 근로시간은 24시간(1일)중에 8시간을 초과해서는 안되며, 주간 최대 근로시간은 40시간이며

- 2개 근무조로 운영되는 경우 배치된 근로자의 최대근무시간은 주간 최대 38과 3/4시간,
- 3개 근무조가 운영되거나 연속적인 근무로 배치된 근로자의 최대근무시간은 주간 최대 37과 1/2시간임

□ 휴식

- 잔업시간을 포함하여 근로자의 최대 근무시간은 주간 48시간이며, 사업주는 근무조의 근무시간이 6시간 이상이면 근로자에게 휴식시간과 30분간의 식사시간을 부여해야 함
 - 근무시간 4시간 30분 이상인 청소년근로자의 경우 사업주는 휴식시간과 30분간의 식사시간을 부여
 - 근무중단(휴식)이 불가능하다면 근로자는 작업방해 또는 근무중단 없이 휴식과 재충전(refresh)을 위해 합당한 휴식시간을 받아야 하며, 휴식과 재충전(refresh)을 위한 휴게시간은 근무시간에 불산입되나, 작업장에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보호를 하기 위한 휴게시간은 근무시간에 산입

□ 하루 중 연속적인 휴식

- 사업주는 한 근로교대시간의 종료와 또 다른 근로교대시간의 개시 사이에, 근로자는 24시간 이내에 연속적으로 최저 12시간 동안의 휴식을 가지고, 청소년 근로자는 24시간 이내에 최소한 연속적으로 14시간 동안의 휴식을 가지는 방법으로 근로시간을 조정할 의무가 있음
- 상기의 휴식은 근로자의 생명 또는 건강을 위태롭게 하는 위협을 피하는 것과 관련하여 긴급한 수리 업무를 수행할 때 및 임시 행사의 경우에 18세 이상인 근로자에 대해 연속적으로 그리고 업무군에 따라 8시간으로 단축될 수 있음
 - 휴식시간의 감소가 그 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함

□ 주중 연속적인 휴식

- 사업주는 1주에 연속적인 2일간의 휴일을 보장하기 위해 근무시간을 배분해야 함. 이러한 연속휴일은 주말(또는 일요일)과 월요일에 일치되어야 함.
 - 직무특성 또는 작업조건으로 인해 상기와 같이 근무시간을 배분하지 못한다면 사업주는 주중에 2일의 연속휴일을 보장하여야 함
- 만약 작업운영 사유 때문에 근무시간이 상기와 같이 배분되지 못한다면, 근로자 대표와 협의하거나 18세 이상 근로자와 협약을 통해 근로자가 1주내에 최소 일요일까지 24시간(1일)의 휴일을 갖게 하기 위하여 근무시간을 배분해야 함

□ 연장 근무

- 연장근무는 사업주의 요구에 의해 근로자가 수행하는 근무 또는 사전에 결정된 근무시간인 주당 근무시간의 범위를 벗어난 것에 대해 근로자의 동의로 수행되는 근무, 근무조의 계획을 넘어서는 근로를 의미
- 만약 일시적이거나 긴급한 노동요구, 공공이익요구가 있다면(단, 2개 근무조 사이에 연속적인 휴식시간을 포함하거나 노동법에 명기된 특별조건을 맞추거나 공식적인 휴일을 포함)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연장근무를 요구할 수 있음. 여기서 2개 근무조 사이에 연속적인 휴식은 8시간 이상이어야 함
- 만약 사업주가 근로자 대표와 장기간(단, 연속적인 12개월을 초과하지는 않는 기간) 근로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면 연속적인 4개월 이하 동안 매주 평균 8시간을 초과해서는 안 됨
- 사업주가 1년에 근로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최대 연장근무는 150시간임
 - 연장근무의 용어나 범위는 근로자 대표와 협약을 체결한 후 사업주에 의해 결정, 만약 타당한 이유가 있다면 사업주는 상기 확정된 연장근무시간을 근로자 개인당 25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근로자와 협약을 맺어 연장할 수 있음
 - 위험한 폭발물에 관련된 직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연장근무를 할 수 없음
 - 노동법에 명기된 특정직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근무절차를 마련하기 위

- 해 필요하다면 그러한 직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와 연장근무에 대해 협의해야 함
- 연장근무시에는 사업주는 통상임금과 가산수당(평균임금의 25% 이상)를 지급하여야 하며, 사업주와 근로자가 연장근무 시 휴식부여에 동의한다면 근로자는 가산수당 지급 없이 1시간의 연장근무에 대해 1시간의 휴식을 보장 받음

□ 공식 휴가일

- 공식휴가일은 연속적인 주 휴무일과 법정공휴일
 - 근로자는 특별히 제외된 일을 제외하고 근로자 대표와 사전 협의 후 공식적인 휴가일 동안 근로를 할 수 있음
- 특정직무나 꼭 수행해야할 업무(가령 긴급한 보수 직무 또는 재고품목조사 그리고 결산·마감 직무)일 경우 주중휴일에 근로할 수 있음
 - 지속적으로 수행해야하는 직무나 사업장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직무일 경우 근로자는 법정공휴일에 근로를 할 수 있음
- 법정공휴일 동안 근무할 시에는 사업주는 통상임금과 가산수당(평균임금의 최소 50%)를 지급하여야 함
 - 근로자가 연속적인 휴일이 법정공휴일과 일치 하는 날 근로할 경우 가산수당이 지급 됨
 - 사업주와 근로자가 법정공휴일 근로에 대해 휴일을 보장하는 것에 동의하면 근로자는 특별수당 지급 없이 법정공휴일 1시간 근무에 대해 1시간의 휴식을 얻게 됨

□ 휴가

- a) 연간휴가(연차) 또는 비례 휴가
 - 동일한 사업주와 지속적인 고용관계로 최소 연간 60일 동안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근로자는 연간휴가를 보장 받으며, 전체 1년을 통틀어 고용이 지속적으로 이루어 지지 않는 사유가 발생할 시 이와 비례한 휴가를 부여 받음

- 근무일은 근로자 본인 근무조의 주요한 직무에 근로를 제공하는 동안의 근무 일자를 의미하며, 격일로 근무하는 근무조는 근무일에 합산되지 않음
- 비례휴가는 다음과 같이 계산 : 동일하면서 연속적인 고용기간인 총 개월에 대한 연간휴가의 1/12
- 기본권적 성격의 법적 휴가 수급권은 4주 이상 이어야 하며, 18세에 도달한 이 후부터 연말기준 최소 15년이 된 근로자는 5주 이상의 휴가를 부여 받아야 함
- 개별 근무일(평일) 또는 연중 평균근무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근로자는 연간 평균근무 시간 초과분에 비례한 휴가일수를 부여 받음

b) 근무휴가일

- 연간휴가 또는 비례휴가를 부여 받지 못하면서 최소 60일 동안 동일한 사업장에서 근무하지 못한 근로자는 연중 22일의 근무일에 대해 연간휴가의 1/12 과 동일한 직무휴가를 부여 받음

c) 추가휴가

- 미네랄 채굴 또는 터널공사 등 지하에서 연중 근무하는 근로자, 특별히 어렵거나 건강에 해롭다고 특징지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는 1주의 부가적인 추가휴가를 부여 받음
- 건강에 해로운 환경 또는 건강에 해롭거나 어려워 특화된 직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란 건강센터에서 근무하거나 또는 전염병과 에이즈환자를 위한 장소에서 근무 또는 전염물질을 다루는 장소에서 근무하거나 감염위험에 직접적으로 노출된 근로자를 의미
- 건강에 유해한 각종직무와 근무장소 및 지역은 법으로 규정
- 임금을 대신하여 부가적으로 지급되는 휴가는 다른 휴가보다 우선적으로 보장되어야 함

○ 휴가와 관련된 일반적인 법 조항

- 휴가기간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사전 협의한 후 사전에 승인된 휴가계획을 발표, 휴가기간을 결정할 때 근로자의 합리적인 이익과 사업주의 요구를 고려하는 것이 필요

- 직무상의 필요에 따라 근로자의 이익을 조절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근로자 대표와 협약을 통해 휴가를 2주 이하로 할 수 있음
- 근로자와 사업주간 다른 합의가 없는 경우 휴가는 몇 번(최소 1번에 2주 이상)에 나누어 부여되며, 사업주는 최소 14일 전에 근로자에게 휴가고지서를 주어야 함. 고지 기간은 근로자의 동의 하에 예외적인 조건에 따라 줄일 수 있음
- 사업주는 이미 부여받은 휴가의 계획을 변경시키거나 또는 특정시기에 휴가를 취소하여 발생한 비용에 대해 근로자에게 보상해 주어야 함
- 근로자가 받지 못한 휴가에 대한 보상으로써 근로자는 평균임금과 동등한 임금을 지급을 받아야 함

□ 근로계약의 종료

○ 근로계약은 다음의 경우 종료

a) 양측(사업주, 근로자)의 상호 계약에 의해

- 사업주와 근로자가 근로계약 종료에 동의한다면 고용은 양측이 동의한 일자에 종료
- 고용종료계약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서명으로 체결

b) 해고/사직에 의해

- 사업주와 근로자 양측은 해고/사직에 의해 고용을 종료
- 노동법은 고지기간을 정의하고 있어, 사업주에 의한 해고나 근로자의 사직의 경우 고지기간은 최소 2개월, 사업주와 5년 이상 근로계약을 한 근로자의 경우 고지기간은 3개월

c) 고지가 없는 경우

- 고용은 법에 규정된 특별한 기간에 해당하거나, 법에 의해 미리 확정된 기간 내에 고지 없이 종료 가능

d) 견습기간

- 사업주와 근로자 양측은 어떤 사유가 있거나, 심지어 특정한 사유가 없을 때

에도 견습기간동안 고용을 종료시킬 수 있음. 고용종료고지서는 통상적으로 고용종료가 제기되기 전 최소 3일전에 사업주나 근로자에게 통지되어야 함

e) 근로자의 사망

- 고용기간을 정한 고용은 기간의 만료로 종료되나, 기간 만료 전이라도 시민권이 없는 외국인 또는 특정인의 고용은 다음과 같이 종료
 - 슬로바키아 영토에서 체류기간이 종료된 날, 특히 체류기간의 취소가 결정된 날
 - 슬로바키아 영토 내에서 망명자로 선고된 날
 - 슬로바키아 영토 내에서 특정 거주자격을 받은 기간이 만료된 날
- 노동법은 근로자의 대량 해고에 특별한 절차 규정
-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직무 또는 사업주의 욕구를 충족하지 못하는 고용계약의 경우 사업주는 개인과 특별근로 계약을 체결, 이러한 특별근로 계약은 특정 직무계약과 학생근로계약을 포함
- 사업주와 근로자가 특정직무계약을 체결할 경우 연간 근로시간을 300시간 초과해서는 안 됨. 예상 직무범위는 다른 특정직무 계약 하에 사업주를 위해 근로자가 수행하는 직무 포함

□ 특정직무계약

- 특정직무계약은 서명날인이 되어있어야 하며, 직접적으로 직무성격을 추정할 수 없는 경우 직무, 직무수행에 대한 수수료, 일자, 수행되어야 할 직무 그리고 예상 직무범위를 명시하여야 함
- 특정직무계약은 다음의 경우 종료
 - 직무수행 완료
 - 상호 협의
 - 근로자의 계약취소

학생근로계약

- 학생에 대한 근로계약은 학생의 신분을 갖는 개인과 사업주 사이에 체결. 예상되는 직무범위가 연간 100시간을 초과하지 않아야 함
- 학생근로 계약 하에서는 기술된 주당 근무시간의 평균 1시간 반을 초과하는 직 무는 포함할 수 없음
- 학생근로계약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명을 포함하며, 계약은 다음 사항을 포함해야 함
 - 동의된 직무, 직무에 대한 동의된 수수료, 근로시간과 계약기간에 대한 동의, 사업주는 학생근로계약의 사본을 근로자에게 제공해야 하며, 학생증은 계약서에 필수적으로 부착되어야 함

4

관련 기관 및 사이트

현지 유관기관

- 주 슬로바키아 한국대사관
 - 주소 : 5th Floor, 4 Dunajska, 811 08 Bratislava
 - 전화 : +421 233 070 711
 - 홈페이지 : www.mofat.go.kr/slovakia
- 프라하 한국무역관
 - 주소 : Panorama Center, Skretova12, 120 00 Praha 2
 - 전화 : +420 245 005 650
 - 홈페이지 : www.kotra.or.kr

투자 관련 유관기관

- Ministry of Economy(경제부)

- 주소 : Mierova 19, 827 15 Bratislav 212
- 전화 : +421 248 541 111
- 홈페이지 : www.economy.sk
- SARIO(슬로바키아 투자무역청)
 - 주소 : Martineckova 17, 821 01 Bratislava
 - 전화 : +421 258 100 310
 - 홈페이지 : www.sario.sk
- Socialna Poistovna(사회보장세)
 - 주소 : ul. 29. augusta 8, 813 63 Bratislava 1
 - 전화 : +421 259 248 111
 - 홈페이지 : www.socpoist.sk
- Slovak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상공회의소)
 - 주소 : Gorkeho 9, 816 03 Bratislava
 - 전화 : +421 254 433 291
 - 홈페이지 : www.spok.sk
- National Labour Office(노동사무소)
 - 주소 : Vazorova 7/A, 816 16 Bratislava
 - 전화 : +421 257 291 303
 - 홈페이지 : www.upsvar.sk
- Tax Directorate(국세청)
 - 주소 : Nova ulica c. 13, 975 04 Banska Bystrica
 - 전화 : +421 484 393 111
 - 홈페이지 : www.drshr.sk

법률회사 및 컨설팅

- Deloitte
 - 주소 : Apollo BC, Prievozska 2/B, 821 09 Bratislava

- 전화 : +421 258 249 111
- 홈페이지 : www.deloitte.sk
- KPMG
 - 주소 : Mostova 2, 811 02 Bratislava
 - 전화 : +421 259 984 610
 - 홈페이지 : www.kpmg.sk
- PricewaterhouseCoopers
 - 주소 : Hviezdoslavovo nam. 20, 815 32 Bratislava
 - 전화 : +421 259 350 111
 - 홈페이지 : www.pwc.com/sk
- Linklaters
 - 주소 : Hviezdoslavovo nam. 13, 811 02 Bratislava
 - 전화 : +421 259 291 154
 - 홈페이지 : www.linklaters.com
- WHITE&CASE
 - 주소 : Hlavne nam. 5, 611 01, Bratislava
 - 전화 : +421 254 415 100
 - 홈페이지 : www.whitecase.com
- CECHOVA RAKOVSKY
 - 주소 : Hurbanovo nam 5, 811 03, Bratislava
 - 전화 : +421 254 414 441
 - 홈페이지 : www.cechrak.sk
- BMB Partners
 - 주소 : Kapucinska 7, 811 03, Bratislava
 - 전화 : +421 254 412 23
 - 홈페이지 : www.bmb.sk
- Capital Partners Group

- 주소 : Hattalova 12/A, 831 03 Bratislava
- 전화 : +421 244 453 692
- 홈페이지 : www.cpg.sk

은행

○ Citibank

- 주소 : Mlynske nivy 43, 825 01 Bratislava
- 전화 : +421 258 230 332
- 홈페이지 : www.citibank.com/slovakia

관련 정보제공 사이트

○ 국내기관 사이트

- 1) 외교통상부: www.mofat.go.kr
- 2) 대한무역투자공사(KOTRA): www.kotra.or.kr
- 3) 국세청: www.nts.go.kr
- 4) 한국무역협회: www.mofa.go.kr
- 5) 세계법제정보센터: www.world.mogle.go.kr
- 6) 한국수출입은행: www.koreaexim.go.kr
- 7) 방송통신위원회: www.kcc.go.kr
- 8) 국제부흥개발은행(IBRD): www.worldbank.org

○ 슬로바키아기관 사이트

- 슬로바키아정부: www.government.gov.sk
- 슬로바키아경제부: www.economy.gov.sk
- 슬로바키아투자무역개발청(SARIO): www.sario.sk

○ 기타 사이트

- 1) 파이낸셜타임즈: www.ft.com
- 2) 구글: www.google.com

3) Pravda일간지: www.pravda.sk

4) 통합검색사이트: www.zoznam.sk , www.atlas.sk



본 책자는 우리 기업들이 슬로바키아에 진출 시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슬로바키아의 조세법 및 관련 법령을 개괄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체적인 사례에 대한 법령 적용 등은 반드시 슬로바키아 세법 및 조세조약의 관련 조문을 확인한 후에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안내서의 내용 중 오류나 개선할 점에 대하여 아래 연락처로 알려주시면 다음 기회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국 세 청

국제조세관리관실 국제협력담당관실

전화번호 : 02-397-1407

팩스번호 : 02-723-9976

원고 작성 및 편집

대구지방국세청 남대구세무서 국세조사관 은경례

대구지방국세청 조 사 1 국 국세조사관 류재무

대구지방국세청 조 사 1 국 국세조사관 오주경

대구지방국세청 구미세무서 국세조사관 이민우

대구지방국세청 구미세무서 국세조사관 황보웅

* 본 책자를 복사 출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실 국제협력담당관실 (☎397-1407)로 사전에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